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본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초안(草案)으로서, 향후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초 안

차례

추진과제

I.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1
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32
II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90
IV.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140
V.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155
VI.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163

초안

추진 과제



I.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의 존엄은 생명존중으로부터 시작되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의 기초임.

사람은 국가 또는 기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며 각자의 신념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음. 기본적 자유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을 통해 보장됨.

권익 침해에 대하여는 구제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행정·사법이 정의롭게 실현되도록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음. 민주적 참여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함.

1. 생명권

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지속적 확인
-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② 자살예방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

초 안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 제거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 (자살 실태조사)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연구 표본 및 조사 결과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 특성 항목 내 성정체성을 추가하는 방안 중·장기 검토
-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위기대상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등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반영 검토
-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통해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 문제 조기 발견
 -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 치료지원 지속

2. 신체의 자유

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 인신구속 관련 형사절차에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계속
- 전국 8개 검찰청에 설치한 ‘인권보호부’ 운영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신구속 등 차단 노력 지속
-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독직폭행·가혹행위 엄벌 기조 유지

②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현대화 지속 추진

초 안

- 신축(6개) : 화성여자·태백·남원교도소, 경기북부·대전·광주구치소
- 이전·현대화(7개) : 안양·전주·원주·창원·대전·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 유희부지 내 수용동 증·개축 지속 추진
 - ('23. 9개) : 천안·목포·영월·순천·제주·진주·군산교도소, 서울·울산구치소
 - ('24. 5개) : 논산·서산지소, 여주·포항교도소, 인천구치소
 - ('25. 5개) : 영월·정읍·해남·장흥·상주교도소
 - ('26. 3개) : 천안·춘천교도소, 통영구치소
 - ('27. 2개) : 안동·강원북부교도소
- 수도권 과밀수용(수용률 100% 초과) 해소를 위해 서울소년원의 시설 소규모·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법원 위탁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을 통해 과밀수용 해소 추진

③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 직업훈련과정 개편(단순 기능습득→실질 취업역량 강화)
 - 다기능(복수 자격취득) 기술과정 확대
 - 고급기술 숙련자 양성을 위한 향상과정(산업기사 이상) 확대
- 학점은행제 도입을 통한 직업훈련 내실화
 - 산업기사 이상의 교육과정 평가인정을 통해 학점 및 학위 취득 기반 마련
 - '23년 6월경 :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신청 접수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0개 기관 19개 과정
 - '24년 상반기 :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기관, 학점은행제 교육 시행

초 안

- 시대맞춤형 및 4차 산업분야 신직종 신설, 기능경기반 활성화 등 고급기능인 양성 강화
 - － 첨단직종 발굴 및 신설
 - － 웹툰 등 문화콘텐츠 분야 신설 및 교도작업 병행
- 외국인 수용자 대상 한글 교육 내실화 방안 추진
 - －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소양 함양 위주의 한글 교육을 개편, 한국의 문화·예절 분야까지 교육
-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교육 인원 확대 추진
 - － 장애인 전담 수용기관 조정 등 조치를 통해 여주교도소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교육 인원 확대 및 교육내용 다양화
-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 －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중심의 실효적인 제도 운용
 - － '24년까지 교정시설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를 완료하여 가족접견의 효과성 제고

※ 원주교도소 등 공간협소로 설치 불가능한 5개 기관의 경우, 기관 이전 시 설계를 추진하고, 화상 가족접견을 적극 활용

④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개선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착공,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시설 조성(現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착수('23.)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완료,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시설 조성공사 착공, 광

초 안

주소녀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설계 착수 추진('24.)

- 춘천소년원 교육관 및 청사 등 관리동 신축 완료,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공사 완료 ('25.)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완료('26.)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른 소년원생 개방처우 확대>

- 가족캠프, 문화자연체험학습, 국토 탐방 등 소년원생 개방처우 재개, 전국소년보호기관 소통과 화합을 위한 축구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행사 매년 개최('23.~'27.)

<지속적인 인권 현장 모니터링>

- 연 1회 이상 소년 보호기관 수용 실태점검 등을 통한 인권 모니터링 수행, 직원 인권 교육 시행('23.~'27.)

<기타>

- 회복적 사범 프로그램 전국기관 확대 운영, 소년원생 1일 급식비를 최소 중학생 수준 (성장기를 감안하여 균형잡힌 식단과 영양공급)에 부합하도록 급식비 현실화 추진
- 소년원생 입원부터 출원까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처우 본격 개편 및 제도 정착('23.~'27.)

⑤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개선

- 부작용 예방 및 최소화
 - 검증된 약물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특이사항 등 점검
 - 전문의 부작용 소견 시 약물투여 일시중단 후 부작용 우선 치료
- 치료명령 임시해제 신청제도 활용
 - 치료명령 집행개시 6개월 후 이행상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임시해제

초안

신청제도* 활용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및 집행 관리·감독 철저
 - － 피치료자의 부작용 사례 적극 대응 및 약물치료 집행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 － 집행 현황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약물치료 집행 절차 준수 강화
- 전문가 집행협의
 - － 약물치료 집행 관련 전문가(보호관찰관, 의료진 등) 간 주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각종 부작용 방지 및 약물치료 효과성 제고

⑥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 강화

- 사업장 및 주거지 등 진입·조사 시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개정 추진
 - － 사업장 단속 시 사업주의 동의를 받을 것과 영업장 및 주거지에 대한 조사 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절차 강화방안 마련

⑦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개방형 보호시설 추가 운영 추진
 -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계획('23.)
 -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추진('24.)
- 「보호외국인 처우에 관련된 법률」 제정 추진
 - － 보호외국인의 처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초 안

강화하고, 이에 걸맞은 외국인 보호시설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

- 인권침해 신고제도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실시하고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 시 외부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공정한 결정을 위해 외부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신설하여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 심사 강화 추진

- 보호 일시 해제 심사 시, 인도적인 사유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지속 검토

⑧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 「인신보호법」의 실효적인 개정안 검토
 - 고지의무 및 서류 비치의무 등 부과, 구제 청구 이후 임의 이송 또는 수용 해제 금지,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개정 등
- 법률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행정처 등)간 지속적 협의

3. 안전권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가 신변보호부터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심리치유, 일상회복 등 필요한 지원제도를 빠짐없이 안내·연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 범죄피해 보호·지원 및 민간단체 종사자 교육 지속 실시(매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매년)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법무부 주도하에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총 87개 세부 정책 추진과제)

초 안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2.~’26.)’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권 존중 및 인간다운 삶 보장 실현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 확보(매년)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 스마일센터 세미나 등을 통한 심리치료 역량 강화(매년)
 -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감염병 상황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신분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에게는 스스로 심리상태를 점검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범죄피해 유형, 치료 효과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한 ‘다랑안심캠페인’ 개최(매년 상반기)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관련 종사자 등이 조화롭게 교류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매년 하반기)
- 범죄피해 보호·지원 제도 개선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발간(’23.)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범위 확대 추진

초 안

※ 이를 위해 '20. 11.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안건 설명, 국회 논의 지원 등 예정

②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 기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범죄피해자 외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추진
 - －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전문성 강화 및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노력
 - －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리 확대 추진
 - －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 등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진술조력인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 다양한 지역 기반 및 경력,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여 인력의 양적·질적 향상 추진
 - － 진술조력인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편
 - － 진술조력인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 － 진술조력인 업무매뉴얼 정비

③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시, 개선방안 적극 협력('23.~)
 -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에 변호인 메모보장 및 의뢰인과의 대화비밀 보장 등,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침을 규범화하여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
 -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서는 이미

초안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④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 '23년 3월 제정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맞춰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 제작·배포 예정,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회적 상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 보완 검토

※ 매뉴얼 제작 및 배포('23. 내), 규정 보완 검토(장기적 검토)

- '경찰 인권교육 기본계획('23.~'25.)' 수립 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
-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경찰관서 직장교육 지속 실시
- 사회적 약자의 인권, 평등권 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관련 인권교육 등을 지속 실시

⑤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2차 피해 방지
 -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현장경찰관 등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장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초 안

- 피해자 심리안정, 신체안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임시숙소 안전성 확보
- 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 귀가 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방안 마련
-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정보 신속 제공
- 성폭력 피해자 대응 절차 및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
 - 경찰청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챗봇」 활용, 피해 신고 및 지원기관 연계 활성화
 - ※ 운영성과 분석 및 유사판례 등 주요 콘텐츠 수시 업데이트
 - 경찰청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기능 보완 등 고도화 추진
-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명예훼손·모욕·협박 등) 신고 시 수사 강화 등 엄정 대응
 -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I 음성인식 활용 피해조사 시스템*」 도입, 운영 중으로 전 시·도 경찰서로 확대 추진
 - * 성폭력 피해자 동의를 받아 수사관·피해자 문답을 AI 음성인식을 통해 자동 기록·저장·출력하는 시스템('20. 12. 14.부터 시범운영) / 성폭력 신고, 조사 중에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부주의한 언행이나 폐쇄적, 유도적 질문 등 2차 피해를 막고,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
 -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 적극 활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 ※ 피해자 조사 시 국선변호사 선임 제도를 신속히 고지하여 피해자가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체류 외국인 등 증가에 대비,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번역 대상 언어 지속 확대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초 안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강화

- 현재 전국 총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 중으로, 여성아동 범죄조사부의 전문수사 기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수사 전문성 제고 및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및 수사 매뉴얼 개정·시행 및 철저 준수
 - 전문가 초청 강연, 유관기관 현장방문 간담회 등 관련기관 협업시스템 강화를 통한 능동적·효과적인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 적극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피해자의 생명·신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
 - 우수수사 사례 전파, 잠정조치 사례집 배포 등 전담검사 전문화를 통한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
 - 개정 스토킹처벌법*('23. 6. 21. 국회 의결)을 반영하여 매뉴얼·지침 등을 재정비하여 현장의 실효적인 법 집행 지원

*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

⑥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 대한민국 안전대진단 및 하절기·동절기 등 주요 계기 안전관리실태 점검
 -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 운영 및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초 안

-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 유원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지원 등 안전관리 강화
-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야영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 주요 계기(대한민국 안전대진단 및 여름·겨울철, 단풍철, 연말연시 등)별 유관 협·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관광숙박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 호텔업·콘도업 종사자 온·오프라인 교육 시 안전관리 내용 강화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체육시설 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반기마다 정기 안전점검 및 하절기·동절기 등 주요 계기별 안전점검 실시
 - 체육시설법령에 시설 및 위생·안전기준 관련 제도 정비
 -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등 안전경영 문화 확산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되었거나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훈련 컨설팅 실시
 -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설별 매뉴얼 작성 및 훈련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

⑦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SOC(사회기반시설)·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및 설계강화>

-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23.~'27.)

초 안

- 내화구조, 복합자재 등 품질인정 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국토교통 분야 SOC(사회기반시설) 시설물 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수립된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21.~'25.) 및 연도별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실시
 - 내진설계 기준 강화 이전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은 추가적인 내진보강(성능향상) 검토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속 확충
- 차량 중심 상시 현장 단속 실시 및 일정 규모 이상 업체(50대 이상 보유) 전수·불시점검
- 3.5톤 이하 화물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24.~'27.)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23.)

⑧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 해결추진

- 치안 현장 문제 대응을 위하여 이미 개발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과학치안 기반의 폴리스랩 생태계 확대(폴리스랩 2.0)
 - 과학기술 기반 경찰치안(생활치안 등) 역량 강화 및 미래 치안 이슈 선제 대응을 포함한 과학치안 분야 전반 지원
 -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선정과제(19개) 관리, '23. 신규과제(4개) 선정(~'23.)
 - 기존('21.~'23.) 선정 과제(23개) 관리 및 현장 적용(실증) 지원('24.~'25.)
 - 후속사업(폴리스랩 3.0) 기획 및 추진('26.~'27.)
- 부처·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까지 수요 발굴 대상을 확대·강화하여

초안

다양한 현안에 긴급대응 연구 착수, 연구개발 성과 활용도 제고

- 상시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실증·확산 지원(∼'23.)
- 후속 사업기획 및 추진(∼'24.)

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지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참여형 지진 홍보사업 실시
 - 국민참여형 지진안전 웹툰 공모전('23. 5.~7.)
 - 지진안전 캠페인 개최를 위한 지진안전 누리집(지진안전.com) 개설, TV, 라디오,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매체별 광고 송출 등 홍보사업 추진('23. 7.~9.)
- 안전취약계층(특수학교 학생·교사)을 위한 찾아가는 지진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
 - 자력대피가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수학교 학생·지도교사 대상 지진안전교육(지진의 이해, 지진행동요령 등) 실시('23. 4.~10.)
 - 특수학교 학생·교사 대상 지진교육자료 배포(학생용 10,000부, 교사용 2,000부 등)
 - 안전취약계층 조력자(자율방범대, 공무원 등) 대상 교육자료 개발

⑩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제2차 경찰 인권교육 기본계획('23.~'25.)」 수립 추진
- 경찰 인권교육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경찰 인권교육의 체계적 기틀 마련
- 외부전문 교육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직무에 걸맞은 맞춤형 사이버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관리시스템 체계적 구축

초 안

- 경찰 소관 법률에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틀 마련 추진
- 국가인권위원회·서울대학교 인권센터·경찰청 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를 구성,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외부 전문기관의 시각을 반영하고 인권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
- 외부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로 내부 통제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
 - ‘23년 정기 직제 신설을 위한 노력 지속
-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전 경찰서 시설개선(조사·사무 공간 분리)을 목표로 각 기능별 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여 경찰관서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
 - 수사 과정상 권리 고지의무 불이행, 수사 지연, 불친절·폭언 등 수사절차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 매년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고충민원 유형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빈발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
 - ※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개월마다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수사 진행결과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도록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22. 6. 20.)

⑪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 위기가족 대상 가족희망드림 지원 사업의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 전국적 확대 추진
 - 사업수행기관 단계적 확대(’22. 93개소→’23. 98개소)
- 재난·사고 등 긴급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홍보 방안 마련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법 적용 지속
-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기소유예 등 적극 고려
-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관계자 국가보안법위반 신중 의율 교육 지속

5. 표현의 자유

①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체계 강화
 -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청각장애인용 교육 콘텐츠(초·중·고교)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영유아·학령기·성인기) 콘텐츠 제작보급 확대
-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혁신
 - 미디어의 음성을 자막·수어로 변환하는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인터넷 등 신규 미디어접근권 향상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기반 조성

초 안

- 장애인방송 인식개선 홍보 영상 제작·송출, 배리어프리 공모전 개최 및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 등 홍보 강화

②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 (삭제·임시조치 후속절차 마련) 온라인상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삭제·임시조치될 경우 정보게재자에 이의제기권 부여
 - 이의제기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권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르고, 이의제기 없을 시 ①삭제의 경우 해당 정보 삭제 상태 유지, ②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삭제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삭제·임시조치의 적절성 여부 검토, 당사자·이용자·사업자 간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며,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도입 검토
 - * 일방 신청으로 양 당사자 합의에 기반한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확정판결) 효력
 - ** 일방의 신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의결 시 민사상 합의 효력(소를 통해서만 불복 가능)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추진

③ 공직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시 입법 지원
 - *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제68조) : 김영배(2110724), 박주민(2117584), 남인순(2118186), 최기상(2118676), 김희곤(2118710) 의원안 국회 계류 중
 - *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제90조) : 김홍걸(2110651), 김영배(2110724), 박주민(2117584), 남인순(2118186), 김희곤(2118710), 신영대(2118948), 민형배(2119334) 의원안 국회 계류 중
 - *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제93조) : 김영배(2110724), 박주민(2117584),

남인순(2118186), 김희곤(2118710), 민형배(2119334) 의원안 국회 계류 중

* 집회를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제103조) : 조은희(2118003), 남인순(2118186), 김희재(2118640), 김용민(2119161), 민형배(2119334) 의원안 국회 계류 중

6. 결사·집회의 자유

①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기반 강화
 -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 －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 참여 기반 마련
 - －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등 지원
-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 －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청소년참여포털, youth.go.kr/ywith) 기능 개선
 - － 정책제안 공모전, 청소년원탁회의 등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창구 운영

②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감염병예방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통과 추진(∼'27.)

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 모든 단체 집회권의 폭넓은 보장을 위한 '중복집회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22. 5. 18.~11. 14.) 결과를 통해 △경찰에 분할개최 명령권 부여 △분할개최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중복집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도출

- 향후 중복집회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 3항 개정 등 국회의 입법 논의 시, 개정 필요성 제시

7. 사생활의 자유

①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 안보위해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하게 운영
 - － 보안관찰제도 운용 시 필요한 유의사항 전파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회의 개최
 - － 충실한 사안 조사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적극적 지도 및 보호 조치 실시
-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을 통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의 도모하고 외부 의견 적극 청취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결정) 취지에 따라 법령 개정 추진

②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초 안

- 수사 과정에서 통신 관련 정보 확인 시 요건과 절차 철저히 준수
 - 전국 검찰청에서 통신 수사 시 법정 요건과 절차,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을 엄격히 준수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23.)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용자에게 사후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③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 오(誤)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 강화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가 오(誤)정보(오기, 착오, 누락, 허위 등)로 판단될 경우,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
 - 지속적으로 실시해오던 일제점검과 함께 병행 실시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 전자문서 사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화
 - 전자문서 사용환경 구축 및 기록보존의 안전성, 접근성 향상을 위해 판결문 등 비전자기록물 이미지화(스캐닝) 실시
- ※ '24년 말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판결문, 신상정보 제출서 등 기존의 종이기록물이 전자문서로 대체되어 유통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시행일('24. 10. 20. 시행)부터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유통 전면 실시
- 제3조(적용범위) 제5호에 「성폭력처벌법」 명시

- 판결문 등 문서로 보관, 관리 중인 신상등록관련 종이기록물을 이미지화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초 안

- 우편송달만 가능했던 등록 관련 서류(판결문, 신상정보 제출서 등) 접수(경찰관서의 장→법무부장관) 소요 시간 대폭 감소 통해 신속성 제고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유관기관인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통해 신상등록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신상공개정보의 정확성 제고
 - 실무협의회 정기·수시 운영*을 통한 기관 간 소통 강화
 - * 협의회 운영주기 : 연 3회(통상 2월, 5월, 9월),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 시 긴급협의회 개최

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 재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또는 하위 법령 개정 검토
- 경찰청 자체규칙*을 통해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 시 원칙 및 절차 규정(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수시 보완 노력 지속
 -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15. 5. 22. 제정, '21. 8. 30. 개정)
 - 선별압수 원칙 준수, 제출자의 참여권 보장, 주요 서식의 교부, 자필서명을 통한 임의제출의사 확인, 임의제출물이 향후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
 - 범행도구로서 사용된(전자정보와 관련성 없는) 매체를 임의제출 받은 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등이 필요해진 경우, 전자정보에 대해 별도의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함 등
- 현장수사관 대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관련 세부 절차 통일 지속 추진

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보호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주요 시스템을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당해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안 제시 등 입법 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의거, 정부는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받아야 함

8. 거주·이전의 자유

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23. 1.)을 통해 보급률 제고
 -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23. 1.) 및 저상버스 도입 지원예산 확대
- 특별교통수단 이동 서비스 향상
 -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23. 7.)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24시간 운영, 광역권 이동) 및 환승·연계 체계 구축 추진
-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형택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지역 활성화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활동 및 교통이용 수요 감소에 따른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 생활편의시설(의료·교육·공공기관)과 교통시설(터미널·철도역)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거점과 배후 마을 간 연계성 강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초 안

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 도서주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 － 섬주민 차량 생산지, 연료, 크기 등에 따른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확대('23.~)
 - ＊ 지원 차량 생산지 기준 폐지, 차량 연료 종류 확대(환경친화적 차량 포함), 지원 차량 크기 제한 폐지
- 섬주민의 부담액이 육지대중교통 수준($\leq 3,500$ 원)으로 낮춰지도록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금 상향 추진

9. 인격권

① 전자감독제도 실효성 제고

- 전자장치의 성능개선을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생활 편의성 증진
 - － 개량형 전자장치의 조기 보급 및 지속적인 전자장치 성능개선 추진
- 전자감독대상자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추진
 - － 심리치료 전문 인력 확보 및 더 많은 외부 자원 활용 등을 통한 전자감독대상자 심리치료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부착명령 임시해제 제도 활성화
 - －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위험성에 따라 임시해제 적극 실시

10.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구제
 - －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에 신속·적극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조사시스템을 지속 확충하고 적극 활용
 - － 전화, 이메일, 화상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실시 및 직접조사 강화
-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 개선 노력
 -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지속 실시
 - － 소속기관에 대한 인권보호상황평가를 통한 인권보호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

② 군 장병 인권보호

<군 장병 인권보호 기반 강화>

- ‘군인권개선추진단’ 창설에 따른 군 인권정책 추진체계 등 전반적 제도 정비
 - － 인사(군인복무기본정책), 복지(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법무(인권정책종합계획) 등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군 인권정책의 연계·통합 방안 검토

<복무 부적응 해소 및 자살예방 체계 강화>

- 자살예방전문교관 양성 및 자살예방교육 강화
 - － 외부 전문기관 교육 등을 통해 군 간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전문교관으로 양성하여 전 장병 대상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

초 안

※ 연간 약 700여 명의 전문교관 양성 목표, 반기 1회 / 2시간 이상 자살예방교육 시행

- 자살예방전문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화·보수교육 프로그램 등을 발전시키고, 병영생활 환경변화에 맞춘 교보재 최신화 추진(지속)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확대

- 비밀보장 등에 대한 우려로 군 병원 이용을 어려워하는 초급간부 대상으로 민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사업 추진('23. ~)

<장병 인권침해 상담·신고시스템 운영>

- 효과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전문성 강화

- 우수한 상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재정립하고, 상담관 감정소진 회복을 지원하여 전문성 지속 확보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제도 개선

- 심리상담이 필요한 장병 대상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지원 강화
- 관심 간부 낙인, 인사상 불이익 우려 등으로 내부상담을 꺼리는 간부에게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민간심리상담 확대 추진(지속)

- 인권상담, 인권침해 구제 및 자문 제도 운용 내실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 카카오톡 상담 등 상담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상담 접근성 향상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군인권자문위원회를 군인권개선자문단으로 확대 운영
- 국방인권모니터단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제안 접수 활성화

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 처리 역량 강화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장기 표류 중인 집단민원을 조정을 통하여 집중해결

초 안

-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추진

- 전문적·효율적·체계적인 대형 집단 고충민원 조정을 위해 특별법 체계 마련

- 「집단민원조정법」 주요 내용

- 민간 조정전문가, 전문직 종사자 등을 조정인으로 위촉하여 조정의 전문성 강화
- 조정 과정 중 관계기관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여 조정의 실효성 담보
- 그 외 행정기관의 조정 신청권 부여, 조정결과 이행관리 강화 등

-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 지원

- 각급기관 민원 담당 직원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통하여 각급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평가하고, 피드백 및 컨설팅을 통해 평가 결과 해당 기관에 환류 유도

④ 회복적 경찰활동

-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 운용관서 확대 및 참여 독려

- 회복적 운영관서 확대('21. 200개서→'22. 230개서→'23. 258개 전관서 운영 추진)
- 회복적 경찰활동 전문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제도 운용의 양적·질적 제고방안 모색
- 우수사례 및 성과 대내외 홍보, 경찰관 대상 전문교육 주기적 실시

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보강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법규개선 소요 파악 및 개선 추진

초 안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통합규정 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한 기본법」 개정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 －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증원하여 '21년 50명에서 '23년 150명으로 확대 추진
- － 사건처리 관계자 및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위탁교육
- －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내 및 대외 지원기관 활용 확대, 다양한 채널 구축

※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앱 및 사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

- －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의료 등 지원 서비스 강화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상별 지원 서비스 추진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실행력 강화

- － 성인지 감수성 전문강사 대상 군 특성을 반영한 직무역량 교육 강화, 강의 모니터링 / 피드백을 통한 전문강사 평가체계 구축
-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군 전담교관 인력풀(Pool) 데이터 베이스 구축, 보수교육 체계 정착
- － 사회 이슈 및 군내 성인지 감수성 변화를 반영한 교육대상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표준교안」 개발 추진
- － MZ세대 장병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

※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담은 숏폼 형태의 동영상 제작 등

- － 부대별 연중 정기적 소집교육을 통해 장병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 유지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전문강사 및 전담교관 역량 강화(매년)

- 성인지 감수성 교육 표준교안 개발('25.)

- 「양성평등소통 자치협의회」 운영 실태 확인(매년)

초 안

-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컨설팅」 용역(매년)
- 「군 성폭력 실태조사」 용역(매년)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실태 점검, 엄중처벌
- 현장 중심의 야전부대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 시행 및 정책 개선사항 의견수렴 / 제도 발전(지속)

⑥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20. 12.~'24. 5, 1년 연장 가능)
 - (조사 기간)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21. 5. 27.~'24. 5. 26., 1년 연장 가능)
 - (보고서 작성) 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 종합보고서 작성(권고 포함)
- 제주4·3 희생자 보상(~'26.)
 - (지급 대상) 희생자(유족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분 지급)
 - (지급기준) 희생자 1인당 9천만원 이하
 - ※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 원 / (후유장애수형인) 후유장애장해등급 등 고려(9천만 원 이하)
 - (신청 기간) 3년('22. 6. 1.~'25. 5. 31.) / (지급 기간) 5년('22. 6. 1.~'26. 12. 31.)

⑦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 ‘해외위해제품 협의체’ 참여기관 확대, 「소비자안전기본법(가칭)」 제정(안) 마련('23.)
-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발의('24.)
- 안전 인증정보 One-Stop 서비스 구축('24.)

-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국제소비자 MOU 체결('25.)
-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보건소·어린이집까지 확대('26.)
- 안전 인증정보 One-Stop 서비스 기능 개선('27.)

11. 참정권

①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를 통한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지속 추진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연장 시행('23.~'27.)을 통하여 입직단계부터 성비 불균형 완화 도모
 - 정책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여 균형잡힌 시각에서 정책이 결정·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여성비율 지속 관리

②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국가공무원 장애인 채용 확대 정책 지속 추진
 - 7·9급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법정 의무고용률 이상)은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채용
 - 중증 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속 추진 및 부처별 수요 적극 발굴

③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지원 대상자) 채용 지속 추진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2%를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초 안

수 있도록 구분하여 채용

④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연장 운영 및 지역인재 7·9급 선발 지속 추진
 - －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람은 타인과 함께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한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이를 위해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등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1. 노동권

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학 저학년부터 전공·흥미 등을 기반으로 진로탐색을 지원, 고학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일 경험을 패키지로 제공
 - (일 경험 확대) 민간기업 주도로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을 확대,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는 한편,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청년·기업 매칭
 -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기업 ESG 차원에서 직무역량 향상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서비스를 지역·고졸청년까지 충분히 제공토록 재정지원
- * 기업을 경영할 때 고려해야 하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 (취약청년 특화지원) 구직단념·자립준비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확대 지원(청년도전 지원사업)

초 안

- 장기실업, 구직단념 등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 (공정채용)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現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확대, 공정채용 컨설팅 등을 통해 공정채용 문화 확산 지원

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 (의무고용률) 공공기관 고용컨설팅 대상 확대 및 명단공표 기준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예산 확대를 통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지원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훈련 접근성 제고
-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 강화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고객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 보조공학센터 확충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 전문고충상담을 통해 노동문제 상담, 직업생활 유지 지원

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안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 안

록 교육 콘텐츠(강의자료 등) 보급 등 지원 강화

- (모성보호 육아 지원 대상 확대)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부모 대상으로 확대 추진
 - － 육아휴직 대상 확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 등을 추진
- 전국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여 맞춤형(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등 경력단절 예방지원 강화

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유입·활용 확대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경력복귀 지원 적극 추진 및 과학기술 분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일자리 복귀를 위한 연구개발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 향상 교육훈련 지속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력복귀 단계별 맞춤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 설계
 - －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 및 출산·육아휴직자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보완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채용(대체)인력 매칭 및 인건비, 직무교육 지속 지원

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 제고 및 재발 조치 강화>

- 엄정하고 공정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기준 마련
 - － 성희롱·성폭력 해당여부 판단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기준을 제시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초 안

- － 성희롱·성폭력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정비
 -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
 - －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이 법령에서 정한 징계 등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절차 개시
 - 사건 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 － 성희롱·성폭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움부즈만’에 배치·운영
 - 기관 내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사건처리결과 포함)을 여성가족부 제출
 - －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조직문화컨설팅 의뢰
 - ’23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 공공부문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요구 등(연중)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 콘텐츠 산업(’23.~’24.), 관광산업 (’25.~’27.)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 3년마다 진행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지속 추진(’24. 예정)
 - * 성추행·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포함하여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활동 현황 및 근무여건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 － 문화·체육 분야 신고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및 정례협의체 개최를 통해 센터간 사례 공유 및 정책개선 등 연계 강화
- ※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문화예술계

초 안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윤리센터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을 위한 사이버 창구 마련 및 상담 실시
 - 법무부 내부망인 법무샘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이버 신고센터(익명)’ 설치·운영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접근성 향상 및 인지도 제고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기관장 사건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한 신고·상담 활성화 및 서비스 연계, 사건처리 등 지원
-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재발방지 교육 등 기관 내 성희롱 근절 지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문화 조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폭력 예방교육 및 2차 피해예방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실시, 소속기관 폭력 예방교육 지원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강화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확산(연중)
- 성희롱·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간보조사업 수행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 지속 점검
 - 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부진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지역사회의 폭력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예방교육 내용 및 강사 질 제고를 위한 전문 강사 양성 확대 및 역량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해

초안

폭력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강화
 - － 신고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공직 내 성고충담당자 워크숍 등 추진
 -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마련
 - － 피해자가 파면·해임, 정직·감봉, 직무 미부여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 이를 조사할 경우 외부전문가 참여
- 성희롱·성폭력 예방제도 홍보 강화
 - － 폭력 예방교육 시 목격자 행동요령,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안내 포함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체계 강화
 - －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지속 추진 및 현장 투영도 지속 점검
 - － 조직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부서 간 상시협의체 지속 운영
 -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추진
 -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교육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건에 대한 상담 및 사안 처리 지원 계속
 -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역량 강화
 - － 시·도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담조직 설치 확대 및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통한 대학 전담기구 역량 강화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질화
 - －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경찰청 성평등 목표 종합계획’ 지속 추진
 -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및 현장점검 추진
 - － 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초 안

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실시(상·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교육 및 정책홍보 지속>

- (외국인 근로자) 기본적 의사소통 및 노동관계법 등 관계법령 교육
- (사업주)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받은 사업주에 대한 사용자 교육 운영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등 근로조건 개선>

- 농축산업·어업 분야 사업장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20% 수준이나, 지도·점검 대상의 40% 이상을 농축산업·어업 분야에 배정하는 한편, 사업장 지도·감독 시 주거실태 집중 점검
- 사용자 교육을 통해 인권·노동관계법령 교육 실시

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의심 사업장 지도·감독 등 지속 추진
 - 기간제 쪼개기 반복갱신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물량 확대 등 현장 지도강화('22. 기간제·차별 정기감독 700개소)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차별 해소>

-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노조 등의 취업규칙 개선명령 신청권 부여 등
- 기업의 정규직 전환 및 사업장 고용구조개선, 차별 해소 지원

초 안

-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액공제 제공
-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을 통한 사업장 고용구조개선·차별 해소 진단 및 개선이행 지원

⑧ 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근로감독 강화 등 불법파견 근절 추진>

- 파견·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 사용 근절
 - 일시·간헐적 사유 위반 등 파견제도를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례(유형)별로 집중 감독 실시, 파견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감독 강화
 -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 등과 지방관서의 근로감독 연계

<원·하청 노동자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 등을 대상,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참여 사업장 등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추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 수준 제고 방안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별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본적 권익 증진 방안 마련

⑨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유산·사산·조산 및 새로운 유해요인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근로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을 확대하여 보장성 강화
- (재해조사 역량 강화) 특수건강검진 및 건강검진 자료 자동입수 추진, 질병별 결정사

초 안

례 데이터 분석으로 재해조사 착안사항을 개발·적용하여 처리기간 단축

- (역학조사 처리기간 단축) 직업환경연구원 및 산업보건연구원 인력·예산 확충, 역학조사 생략대상 범위 확대, 역학조사 수행기관 업무절차 개선 등으로 처리기간 단축

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전문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캠페인, 최저임금 준수 지도

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직업훈련 기회확대를 통한 포용적 훈련 실시>

-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 중소기업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 ※ 훈련제도 안내 및 상담, 직업능력개발 진단 컨설팅,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통한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 탈피>

- 비대면 환경에서도 현장감 있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공공 훈련 플랫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운영하여 훈련의 시·공간적 제약 완화
 - － 민간 공급이 취약한 기술공학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 중심 온라인 훈련 콘텐츠 직접 개발·보급
 - ※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계획(목표) : ('23.) 400개→('24.) 400개
 - ※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계획(목표) : ('23.) 15개→('24.) 15개
 - － 공공 콘텐츠 개발 시 자막을 추가 삽입하여 직업능력개발에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향상 지원('23.~)

초 안

※ '23년부터 수어 및 자막 삽입 훈련콘텐츠 연간 400개 개발(기간뿌리산업, 디지털·신기술 산업, 기초 인문학 등)

- 비대면·스마트 혼합훈련 확산을 위해 온라인 훈련 인프라 보급 지속 추진

※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오픈 마켓 지속 운영

※ 집체훈련기관의 스마트혼합훈련 운영 유도를 위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제공 확대

※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여 콘텐츠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 이러닝 콘텐츠 공모 실시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급감 및 산업·직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직업훈련기관 역할 강화

－ 만 40세 이상 실업자 대상으로 취업성과 및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훈련 직종 개발을 확대하고 신중년 특화과정 지속 운영

※ ('23.) 2,500명→('24.) 2,550명→('25.) 2,800명→('26.) 3,050명→('27.) 3,300명

－ 디지털정보화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디지털소양강화 지원을 위해 신중년 특화과정(6개월)에 AI 교과목(20시간)* 편성 운영

* AI 소프트웨어 활용 및 코딩, 블록코딩을 활용한 AI 기초 등

- 산업전환으로 인해 제조업 등 전통적 직무수행에도 디지털 능력(digital literacy)이 필요해짐에 따라 신중년 재직자 대상 기초 정보통신기술(ICT) 특화과정 운영

※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심사 시 신중년 대상 훈련과정 운영 지침화, 달성도 관리 추진('23.~)

⑫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초 안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직장 내 연령차별 없는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고령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신중년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8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제도 이행 지원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년내일센터의 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확충 추진

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 환경개선 교육·홍보 및 신속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지속
 - 다양한 상담채널 운영(대표전화, 문자, 카카오톡, 1388 등)을 통해 근로청소년 상담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노무관리지도 등 자율개선 중심의 지도점검 강화
-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근로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을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운영
- 근로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한 즉시적인 문제 해결 지원

* 청소년 상담, 교육,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근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근로상담, 현장지원, 연계 지원 등 청소년 근로보호 업무 수행

-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내용 개편 및 운영 지속

초안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능동적인 안전사고 예방 태도 함양을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제공

⑭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 연구회, 자문단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체 운영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의제 발굴 및 논의
-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근로자참여법」 개정 완료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배포
 - ※ (「근로자참여법」 개정) 공포('22. 6. 10.)→시행('22. 12. 11.)→운영매뉴얼 배포('23. 1.)
 -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에 대한 이견 조정 등 관련 입법 노력 지속
-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 의견참여 지원 및 자율적 권익 보호 활동 지원
 - 중앙·지방 사회적 대화에 미조직 노동자 의견 참여 통로 확대 추진
 -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현장의 자율적 질서 확립 지원

⑯ 임금체불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확대
 -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부과대상 확대(퇴직자→퇴직자+재직자)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하여 근로계약 종결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 및 감독결과 공표 등

⑰ 공정임금체계 확립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성별 임금격차 개선 유도
 -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장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 확산
 - － (직무평가 표준안) 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지속하여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의 개편을 희망하는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 (임금정보 인프라)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임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
 - － (현장 확산) 합리적인 임금·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전문가 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지속
- 임금정보 공개 확대
 - －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중인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이외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임금정보 확대 제공 검토
- 임금격차 해소,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운영, 이해관계자 간담회 수회 추진

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초 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피해자 등은 피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법 제102조 등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 조사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2조 제3호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안정망 강화>

-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 대상 월평균 보수금액 상향
 - －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 지원 대상 추가 등에 따라 필요시 지원 수준·요건 등 제도(고시* 등) 개선 추진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취약계층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지속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신규 시행('22. 7.~)

초 안

- 보험료 신청률 제고를 위한 지원 대상별 맞춤형 안내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확대>

- 보건복지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공유를 통한 가입자 발굴 및 가입 추진 확대
- 경력단절 여성, 무소득배우자 등 대상별 가입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 추진
- 국민연금 가입기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대 추진

②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소득기반 고용보험체제로 전환
 - 조세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자 정보가 있는 국세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재구축,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강화
 -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직종 확대
 -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지속 확대
 -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 「산재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 現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것을 적용요건으로 명시
-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업무상 재해 위험,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신규 적용할 수 있는 직종을 실태조사 및 노사의견수렴을 통해 발굴('23 .7.~)

③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초 안

- 먹는물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대상 선정기법 고도화
 - － 신규물질 탐색 강화를 위한 비표적 분석 기반시스템 구축·운영
 - －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수질자료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신규 수질감시항목 설정 등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 － 정수장 원·정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확대 조사
 - － 노출수준, 위해성 평가, 제거효율 평가 등 수질관리 내실화
- 수돗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제도 개선
 - － 수질기준 설정·운영 체계 개선(안)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운영 관련 법 개정(안) 마련 연구

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계속 이행을 통한 깨끗한 물환경 지속 방안 수립
 - － ‘제3차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26.~’35.)

⑤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 물환경의 총체적 건강성 확보를 위해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외에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관리 확대
 - － 수생생물 보호기준 마련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 새벽배송, 국민 다소비 품목, 부적합 다발생

초 안

품목, 소면적 재배 취약 품목 등 집중관리

－ 유통길목에서 부적합 농산물 유통·판매 사전 차단 및 단순처리 농산물* 관리강화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을 한 단순 공정 농산물

－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상시 조사·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사전 예방

－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약 사용 변동에 맞춰 조사대상 유해물질 조정 및 분석 기법 향상

●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 가정간편식 확대, 온라인으로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 환경변화 맞춤형 안전관리

－ 취약 시기, 명절 다소비 축산물 등 위해우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축산물 가공·유통단계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

－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상시 안전성 검사(동물약품, 농약 등)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축산물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을 통한 축산물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집유장)의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연간 위생감시를 통한 지속 관리

－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24년 도입을 목표로 동물약품 확충 및 안전사용기준 재설정 등 사전 준비

※ '24년 1월부터 한육우·젖소·돼지·닭·산란계 대상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적용 계획이며, 농약은 축산분야에서 비의도적 오염인 점을 감안, '24년 이후 적용 추진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내실화 및 내부 심사자 지정 확대

초 안

- 단체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22년 상반기 중 단체인증의 내부 심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인증심사 표본 농가 수 확대**

* 내부 심사자 : GAP 인증을 받은 단체 내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하는 자

** (기존) 신청자 11명 이상~100명 이하 시 표본 농가 수는 제곱근, 101명 이상은 10% 표본 추출→(개선) 신청 농업인이 35명 이상인 경우 20% 이상 표본추출

- GAP 우수농장 현장 견학 등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내부 심사자의 심사역량 제고
- GAP 전문컨설턴트의 현장 컨설팅을 통한 내부심사 활동역량 강화
- 인증품의 잔류농약 분석물량을 늘리고(500→600성분), RPA(로봇처리자동화) 기법 도입으로 온라인상의 비인증품의 인증품 둔갑행위 집중 점검
- 수확 후 처리시설의 GAP 인증품 취급량 등 통계 전수조사(911개소) 및 대량 취급업체(45개소) 특별점검 추진

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먹거리 계획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립·실행 역량 강화(계속)
 - 교육,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수립·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포럼, 지역 먹거리 지수 측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체별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으로 지역별 실행전략 수립 도모
- 지역 먹거리 계획 관련 근거 법령 및 조례 등 제도 보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22. 7. 발효)에 따라 지역 먹거리위원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 마련·제시
- 지역 먹거리 계획의 실행 주체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 통합플랫폼과의

초 안

연계 강화

- 표준화된 지역 식재료, 식재료 유통관리, 영양 및 식품안전 정보제공 등의 기능이 있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개설('22. 6.),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우선 적용
- 로컬푸드 지수를 '먹거리 지수'로 확대·개편하여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 취약계층 먹거리 선택권·접근성 보장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면서 본사업 도입 추진
 - 사회보장심의(보건복지부) 및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등 본사업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사전절차 이행

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회 배달 서비스 등 온라인 판매 수산물, 다소비 수산물 집중 관리
 - 유통 전 신속검사로 부적합 수산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
 - 수산물 위험평가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 조사
 - 수산물의 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
 - 위탁판매시장 평가 시 위생기준 적용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하고 위탁판매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속도에 맞추어 위생기준을 단계적 의무적용 추진
 - 수산물 신선유통을 위한 핵심기술인 활어차 산소공급시스템, 주요 수산물 품질 지표 및 유통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 ※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R&D, '21.~'25., 349억 원)

초 안

-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검사 지속 강화
 - ※ 고등어·갈치 등 다소비·대중성 품종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 지속 확대(연중)
 -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추진 ('21.) 354개소→('27.) 650개소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 － 강우 시 오염물질 유입이 패류 생산해역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패류 채취제한 기준 설정 추진('26.)
 - － 실험실의 패류 위생검사 분석결과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장비 성능시험, 분석인력, 숙련도, 표준문서 등 국제인증(ISO 17025) 확대 추진
 - ※ ('22.) 패류독소(2종)→('23.) 병원성세균(살모넬라)→('24.) 중금속(카드뮴 등 8종)→('25.) PAHs(4종)→('26.) 유기염소계 농약(14종)→('27.) 다이옥신류(17종)

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속 지원>

- 어린이급식소별 급식형태에 따른 맞춤형 현장지원, 취약급식소 집중관리 등 지원 내실화
 - －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등 시설별, 급식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영양관리 지원 세분화
 - ※ 연령별 영유아식단 뿐 아니라 청소년기 식단, 간식형 식단 등 급식형태별 맞춤형 식단 제공
 - －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관리제'를 도입하여 급식소 이력관리 등 관리 강화
- 노인과 더불어 장애인 시설까지 사회복지급식 지원범위 확대 및 센터 추가 확충 추진
 -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

초 안

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본격 시행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센터 확충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수 : ('23.) 68→('24.) 114→('25.) 170→('26.) 모든 시·군·구

<음식점 위생개선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및 기술지원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 배달 음식점 포함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개별 음식점 등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식중독 발생 우려 또는 위생관리 필요 품목(김밥·족발 등)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대상 우선 기술지원

●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이벤트, 유튜브 등), 생활 매체(버스, 지하철 등)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 배달앱 플랫폼 등급지정 표출 확대 및 소통채널을 활용한 제도 홍보

※ 표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위생등급 신청·지정 절차, 기술지원 등 안내

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홍보 및 현장 밀착지원 등 지속 추진

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용자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조합, 공공기관 등)에게 사업비를 기

초안

금 지원하여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모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연간 10만 호)를 공급하되, 필요시 도심 내 취약계층에 즉시 공급이 가능한 전세임대 등을 중심으로 탄력적 공급
 - 특히, 경기침체·재해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중심으로 공공임대 공급 추진('23.~'27. 전체물량의 86%)
 - 또한, 건설임대는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3기 신도시 내 60% 이상)하고, 매입·전세 임대도 도시 내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안) >

(단위 : 만 호 / 사업승인 기준(매입·전세임대는 계약기준))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합계
건설임대	3.5	3.5	3.5	3.5	3.5	17.5
매입임대	3.5	3.5	3.5	3.5	3.5	17.5
전세임대	3.0	3.0	3.0	3.0	3.0	15.0
소계	10.0	10.0	10.0	10.0	10.0	50.0
+α*	(0.7)**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				(0.7)

* 시장여건 및 수급상황을 고려, 주기적으로 공급계획 적정성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 공공임대 조정 물량('23. 전세임대 0.7만 호 추가)은 별도 산정

-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분양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임대(300세대 이상) 내 어린이집, 도서관 등 생활 SOC* 의무 설치

* 주민생활 시설과 밀접한 중소규모 편의시설(체육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등)

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무주택 서민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정상 추진

초 안

- 전월세 자금의 저리대출 지원 지속 강화
 -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월세 대출을 제공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 청년,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대상자 대출 지속 시행
 - 청년 전월세자금 연 8만 호 대출 지속 지원(목표)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 강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상품 등 수혜 대상이 확대된 상품의 적극적 홍보 및 추가 개선사항 검토를 통하여 지원 실적 제고 추진
 - 신혼부부 대출을 지속 지원하면서, 대출상품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구입자금 전환대출 등 도입 검토

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
 -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
 -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별 보수한도액을 상향하여 수급가구의 주거여건 개선

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 설치가 반영된 건설공공임대주택을 일정비율(수도권 8%, 비수도권 5%) 지속 공급

초 안

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 「주택임대차보호법」T/F를 구성하여 시장동향, 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 임대차 제도의 다양한 측면(시장 영향, 법률관계 등)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각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추진('23.)

※ 임대차 제도 도입 영향 평가, 해외사례 조사, 개선방안 검토 및 대안별 심층시뮬레이션 등

- 관계 부처 간 협의, 국회 협력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23.~'24.)

※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

-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실시) '22년 하반기('22. 7. 4)부터 1단계 시범사업 시행
 - － 단계적으로 지역 확대(1단계 : 6개 시군구), 정책효과 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등) 및 운영체계 등 점검

- (본제도 도입 준비)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사회적 논의 및 제도 인프라 구축
* 추진

* 법령 정비 및 관련 정보 연계, 재원 확보 등

연도	이행계획
'23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행('22. 7.~'23. 6.), 2단계 시범사업 시행('23. 하~'24. 상)
'24년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행('24. 하~'25. 상), 본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 및 법령 정비 등 준비
'25년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 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 추진

⑱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과소화, 고령화된 농촌 특성에 맞춰 의료·돌봄·복지 서비스 확충
 - － 농어촌 등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보건복지

초 안

부) 활성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22. 9천 명→'27. 15만 명) 등 농촌특화 의료인프라 확충

- 고령농업인 등 농촌 취약계층에 돌봄·치유·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및 서비스공동체* 육성, 돌봄마을('23. 3개소→'27. 9개소) 등 인프라 강화

* 사회적 농장 및 서비스공동체(개소) : ('22.) 105→('23.) 122→('27.) 260

-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액 상향* 등 지원 확대

* (기준소득액/월 최대 지원금액)(만원/천원) ('22.)100/45→('23.)103/46→('27.)115/52

- 농번기 돌봄방 등 농촌형 보육서비스 확대('22. 185개소→'26. 213개소),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강화 등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 지원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①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고

- 공공보건 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 공공보건 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부재지역에 민간의료기관 활용 또는 지방의료원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보완 등
-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경쟁력 제고
 -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공공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지원 강화

초 안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 치매환자 관련 정보가 통합 구축되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개편
 - ※ 행복e음, 건강보험공단 등 치매환자 관련 정보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 － 치매환자의 욕구 및 필요에 따른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시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조정·연계
-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 서비스 다양화
 - － 중증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 동네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지속적인 관리, 상담·자문 등을 제공하는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 시·군·구별 치매안심마을 조성 확대 및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인을 이용·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확대 시행 등 추진
 - －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呆)” 용어 변경 검토 및 인식개선 홍보 지속 추진
-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여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도록 노력
 - － 경도인지장애*·만 75세 이상 노인·독거노인은 치매 고위험군으로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상담 등의 집중 검사관리 추진
 - * 기억력·인지기능이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하여 아직 치매가 아닌 상태
 - －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중 선별검사 무료 제공, 진단검사는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적용·관리를 통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동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 환자안전사고 분석결과 및 환자안전기준과 연계, 환자안전기준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 지표(‘환자안전지표’) 개발
 - 관련기관 자료요청 및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환자안전지표 마련
- 개발된 환자안전지표를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환자안전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급 지표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하여 관리

- 환자안전지표 고도화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정책과제와 연계한 신규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확산(’23.~’24.)
- 국가 수준의 지표 수집 및 산출을 위한 레지스트리 구축(’25.)
- 국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문화 측정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지표 활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26.~’27.)

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원료 및 완제품 국산화 추진>

-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 기술 개발 지원

※ 연구사업 : (총 기간) 5년(’22.~’26.), (사업비) 50억,

(연구내용) 국가필수의약품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조,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자립화 추진

※ 기타 : 연구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국내 업체로 기술 이전 시 보건복지부에 약가 우대 요청 등 관계 부처 간 협의 예정

<원료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마련>

초 안

- 특정 수입국 高 의존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중단 위기징후 조기파악 및 신속대응을 위한 수급 모니터링 실시

- 위험요인을 사전포착·전파하고, 관련 품목 국내 생산·비축량을 점검하여, 대체 의약품 허가 여부를 감안한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화비축 등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도입 인정을 통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속>

- 현재 지원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도입 인정을 지속함으로써, 희귀난치병 질환자의 적기 치료기회 보장

⑤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
 - 단기 군의관의 장기복무 유도를 위한 수당신설 등 처우개선과 장기 군의관(의대 위탁교육 양성) 의무복무기간 연장(「군인사법」개정) 추진
- 군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버스 증차 추진
 - 군 병원 셔틀버스 증차 (29대→39대, 총 10대 증차)(’23.~’25.)
 - 진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강원권 사단 외진버스 증차(26대→53대, 총 27대 증차)(’23.~’25.)
- 필요할 때 언제든지 치료·상담받을 수 있는 환자중심의 진료여건 개선
 - 군의관 미보직 부대 및 격오지 등에 대한 원격의료 확대*를 통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치료·상담받을 수 있는 상시 진료권 보장
 - * 이동형 원격진료 장비 성능개선 및 사용부대 단계적 확대
 -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 해군 함정 내 신규 시범 도입 예정
 - ※ 해양수산부 LTE-M 망 활용, 연안 93km 내에서도 운용 가능한 신규 체계

초 안

-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향후 5년간 104개 부대 추가 도입 예정

구 분	계(단위:대)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합 계	104	16	22	27	20	19
의무사	7	3	2	1	—	1
육군	59	5	12	17	14	11
해군	34	6	8	8	6	6
공군	4	2	—	1	—	1

- 인공지능(AI) 기반 진단시스템 등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 시스템 개선
 - (AI 진단시스템) AI 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
 - ※ 판독대상 질환 확대(골절, 뇌질환 등) 시범적용부대 확대(36개소→88개소)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체계 구축
 - 국군의료종합상황센터 내 첨단기술 기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응급의 료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 ※ 응급환자 지원을 위한 지휘·통제·관제시스템 통합 추진
 - 의무후송헬기 추가 전력화를 통한 후송체계 고도화
- 국군외상센터 단계적 확대 운영을 통해 최고 수준의 외상진료 제공(민간 개방 시범 사업 병행)
 - (2단계) 1단계 + 소방경찰 외상환자 추가, 55병상(중환자 15, 일반 40) 운영('24.)
 - ※ 1단계 : 군 외상환자와 수도병원에서 수술 대기중인 응급환자 등 군 환자를 대상으로 30병 상(중환자 10, 일반 20) 운영('22.)
 - (3단계) 2단계 + 민간 외상환자(총상, 폭발창, 대량사고)까지 확대하여 60병상 (중환자 20, 일반 40) 전체 운영('26.)

⑥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 학교·유치원 급식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실시(교육(지원)청, 급식 전문가(교수 등))

초 안

등을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지원 강화

- 학교·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학교(유치원)의 위생관리 역량 제고

⑦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학교의 체계적인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강화>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흡연학생 관리>

- 교원 연수 시 흡연 등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지도자 과정 운영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이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⑧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강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역량 강화
 - 마약퇴치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방교육 강사 역량 강화
-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약학대학 행정기관 실무실습* 교수자 양성

초 안

* 지역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마약류 관련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미래의 약학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다양한 계층의 여건에 맞춘 강의식 교육 및 연극, 뮤지컬, 체험형 학습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이해 도모

－ 온라인 예방교육(<http://edu.drugfree.or.kr>) 사이트 운영

● SNS 채널을 이용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신종마약류 정보와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 제공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지도점검>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제공으로 의사의 자발적 마약류 처방량(환자 1인당 평균 마약류 처방량) 감소

● 데이터 기반 지능형 감시체계 운영으로 현장 감시 적발률 제고

●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오남용 의심 의사 수 대폭 감소

⑨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 체내 환경유해 물질 노출수준의 분포, 변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국민 건강보호 기여

－ 만 3세 이상 국민 대상 체내 중금속 등 환경유해 물질 64종의 노출 수준 파악,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국가 대푯값을 산출하고 건강실태 및 영향요인 조사·분석

● 환경보건 정책 연계성 및 활용도를 높인 공공기술 개발 추진

－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기반 확대, 개인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기술 개발사업 추진

- 환경성질환 및 환경보건 디지털 기술개발사업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21.~'28, 880억 원)) 세포 기반 독성유발 경로 분석 기술, 인자·질환 간 원인 규명 기술, 환경성질환 사전 예측 기술, 환경성질환 추적·평가 기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기술 추진
 -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 기술('21.~'24, 300억 원))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 감시 기술, 취약계층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기술

- 환경보건센터 권역형 센터 지정 및 지역 환경보건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사업 추진 및 지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형 센터 운영, 환경보건콘서트 및 환경보건의동학교 등 체감형 서비스 사업 지속 추진

⑩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생활 속 건강위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한 실내공간의 라돈 관리강화>

- 실내 라돈 저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지속 추진
 - 라돈 고농도 지역(전남·경북) 집중조사 실시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수행 : 한국환경공단) 지속 추진
 - 현장 방문을 통해 라돈검출기를 설치·측정하고 라돈 농도값과 저감 컨설팅 내용을 포함한 분석 결과서 제공
 - 300Bq/m³ 이상 고농도 마을회관, 주택을 대상으로 저감 시공을 하고, 저감효과 평가 및 사후관리 실시
- 라돈 고농도 지역의 라돈 우선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속 지원
 - 지역별 라돈현황, 실내 라돈관리 계획지표 설정, 주요 실내라돈 노출원인 조사, 라돈 위해 소통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별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원

※ 대상 지방자치단체 : 전북, 전남, 경북

⑪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개선

- 성장단계별로 환경유해인자 노출 수준과 건강영향 간 인과관계를 추적·검토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 － 임신부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출산 이후 출생아에 대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추적 관찰하여 성장단계별 환경유해인자가 아동의 발달상태*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 규명 및 환경유해인자별 권고기준 마련
- ※ 성장발달, 신경인지발달, 사회성 및 정서발달, 알레르기질환 발생 등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방어력이 낮은 홀로 어르신, 환경성질환자 가구 등 민감·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 － 민감·취약계층 거주 가구·시설 대상 환경성질환 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진단 결과에 따른 열악한 가구·시설의 실내환경개선, 환경성질환 의료 서비스 지원
- 소아·청소년기의 유병률이 높고 성인기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환경성질환의 특성을 고려, 어린이 대상 ‘건강나누리 캠프’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추진
 -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겪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자연체험, 전문 의료 상담, 환경성질환 관리법 안내 등을 연계한 통합적인 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⑫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강화

-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및 안전 강화
 - －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등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와 결과 공개로 국민건강 보호 및 불안 해소
 - － 체계적 통합 평가를 위한 기본계획(’23.~’27.) 수립, 평가대상 유해물질 선정, 유해물질 함량 실태조사,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및 노출 저감화 기술개발

- 통합 위해성 평가 대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제품으로 한정,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위해성 평가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⑬ 기후변화 적응법제 및 대응역량 강화

● 기후 모니터링 체계 및 전망 기술 강화

- 국가적응대책 이행에 따른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기법 개발 및 지방자치단체 적응 대책 성과를 반영한 취약성 평가 방법론 고도화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성과를 고려한 취약성 평가 지표 현실화 및 영향·취약성·리스크를 고려한 종합평가 방안 및 활용전략 마련
-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진단 및 관련 기술개발과 정책연계 역할을 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26.)

* 사·군별 미세 기상변화 대응, 기후변화 데이터 수집·가공 분석을 통해 농가 맞춤형 정보제공 등 총괄

● 기후위기 적응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국가 단위 적응대책 추진체계(수립-이행-평가-환류) 정비 및 모든 이행주체(시민, 청년단체 등)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원 강화 및 중앙·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계성 확보
- 기후위기 적응평가 제도 도입, 부문별 주요 법률 및 계획상 기후위기 적응 고려 기반 구축 및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지원
- 지역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단위 기술(쿨링로드*, 쿨링포그** 등) 적용 및 단위 기술을 조합한 기후탄력도시 표준모델 마련·확산

* 쿨링로드 :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물 분사 시설. 도로 온도를 7~9℃ 낮추는 등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12 $\mu\text{g}/\text{m}^3$ 줄이는 효과 있음

* 쿨링포그 : 증발냉방장치. 노즐에서 물 입자를 미세한 안개처럼 분사시켜 폭염 시 주변 온도

초안

를 낮추거나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소독(방역), 농약살포, 수분공급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치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기반 구축

- － 경제적 취약계층 및 홀로 어르신 등 폭염 및 한파대응 물품 및 단열개선 사업(창호 교체, 벽체단열, 차양설치)으로 기후복지 사각지대 해소
- － 극한 기상현상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적응수단(이동형 폭염쉼터 제작·보급, 휴대용 천막, 선풍기 지원, 홍보·교육) 강화
- － 건강에 취약성 높은 어린이 대상 폭염저감 그늘막 설치, 창문형 에어컨 설치, 쿨 쉼터 제작·보급 등 인명피해 저감 방안 추진
- － 저탄소 농업활동에 따른 추가비용(노동력 투입 등) 보전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농업인 탄소저감 활동 지원체계 마련

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감축 지속

- － 소규모 및 다량배출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
-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생활 주변 유해물질 배출 저감
- －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 － 청천(晴天)계획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사업 지속 추진
- － 국제기구를 활용한 동아시아 대기질 공동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등 각종 지원 최우선 시행

⑮ 생활 소음 대책 마련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강화

－ 건설 공사현장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활성화 및 저소음·저진동 공법 사용 유도

※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저소음·저진동 공법 선진 사례 전파

－ 공사장 현장관리자의 자발적·지속적 소음관리 지원

※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소음저감 자재 대여(BANK, 에어방음벽, 이동식 방음시설 등) 확대 추진

•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확대, 확성기 등 효과적인 이동소음 관리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개선 방안 마련

－ 소음측정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IoT*기반 실시간 소음·진동 측정기반 마련

* IoT(Internet Of Things) : 일반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물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 전기차 보급 및 방음시설 성능·설치 기준 선진화를 통한 교통소음 저감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노력

－ 입주자가 체감하는 층간소음의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 예약 편리성 증대 추진, 이웃사이센터 야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층간소음 갈등 조기 해소 추진

* 전문기관으로 하역금 층간소음 조정 지원,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등을 하게 함

－ 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갈등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층간소음 민원 소통창구 다양화

⑩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이행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 －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 모니터링 절차 반영, 통합관리 적용범위 확대 등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개정('23.)
 - 지방자치단체 단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 지방자치단체의 국토·환경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 지원단* 구성 및 맞춤형 컨설팅,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순회교육 실시('23.~)
- * 환경부·국토부, KEI(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계획 전문가 등 통합관리 지원단 구성

⑪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약제 급여 지속 확대 추진
 - － 매년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의 신규 보험 급여 적용
 - － 항암제 등 보험급여기준 범위 지속 확대
 -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제 선별급여 지속 추진
-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검토
 - － 위험분담 제도 및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 운용 평가를 토대로, 기존 제도의 범위 확대 등 추진 검토 계획 등

⑫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개선

-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초 안

- 의료인·예비의료인·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 관련 현장 방문 무료 교육 시행,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예비의료인 대상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 관련 교육 시행 등
- 대국민 에이즈 바로알기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상별 콘텐츠 제작 및 교육자료 배포
 -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에이즈 바로알기 정보 제공 및 검사활성화 캠페인 실시
-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홍보
 - (대상)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등
 -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 감염경로, 의료행위 중 표준주의 원칙 준수, 지원내용 등

⑲ 화학물질 유해 정보 확보·공개

- 등록이 완료된 기존 화학물질 714종은 유해성, 제조·수입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급성이 높은 물질부터 우선적으로 유해성 심사 실시, 결과 공개(~'24.)
- 연간 제조·수입량 1,000톤 미만인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및 활용을 위해 등록 이행 지원

⑳ 구급시설 의료처우개선

- 의료인력 확보 추진
 - (임기제, 시간선택제 활성화) 임기제 정원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고용 형태를 다각화하여 실질적 보수 증액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 (적극적인 채용 노력) 의료인 전용 인터넷 매체(닥폴, 메디게이트 등)에 채용정보

초 안

를 게시하고, 채용 공고 중심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협회·개원의협회·전문학회 등을 통하여 관심있는 의사와의 개별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원격 및 초빙 진료에 대한 수가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 (공중보건 의사 확보) 향후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공중보건 의사 감축 등에 대비, 교정시설 내 공중보건 의사를 증원 또는 최소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 (의료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추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485호) 별표11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 공무원에게도 의료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함으로 교정시설 의무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
-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하여 외부 전문의 방문진료, 원격의료시스템을 이용한 진료,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적극 실시
- (정신재활치료 수용동 운영 확대) 현재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정신재활치료 수용동(3개 기관 설치 운영 중-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진주교도소)을 단계적으로 확대
- 교정기관 원격의료 진료 활성화
 - (원격진료 활성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현재 전국의 54개 교정기관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설치하고, 39개 협력병원과 원격진료 실시 중이며 협력병원 지속 확보 추진
 - (원격진료 과목 확대) 현재 협력병원을 대상으로 7개과(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원격진료 과목 확대 추진

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②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계·의약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포럼을 추진하는 등 주기적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지역의료·돌봄·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 「커뮤니티케어 근거법」 마련
 - － 기관 간 정보연계 근거, 사업별 연계·조정, 시범사업 근거, 중앙·지방자치단체 역할 구분, 재원 등 근거 마련

③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 국회 제출 「의료법」 개정안*을 기초로 법 개정 추진

*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형, 김성원 의원안

④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침구류·피복 개선>

- 육군·해병대 침구류(모포·포단)를 상용 이불류로 교체(∼'23.)
 - ※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한 조달('22. 10만 세트, 107억 원→'23. 21만 세트, 218억 원)
- 장병 피복 착용 체계(레이어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
 - * 중복된 기능의 피복류를 통합하고 단순화(기능성 외피를 우의 겸용 통합 등)
- 국내 제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위탁생산) 시범사업(언더셔츠) 추진('23. 조달)
 -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내 제조 계약)
- 장병의 피복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금 품목을 추가 확대하고, 상병 보충보급 피복을

초 안

현금성(쿠폰형태)으로 지급하는 방안 추진

<급식환경 개선>

- 미래세대 장병 요구를 충족하는 전투식량 L형* 조달 추진('24.~)

* 가볍고 즉석 취식 가능, 다양한 식단으로 구성, 장기저장 가능한 발열형

-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재료 가격 인상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실시(지속)

* ('23.) 13,000원→('24.) 14,000원→('25.) 15,000원→('26.) 15,450원→('27.) 15,914원

- 다양한 조리가 가능하도록 현대화된 조리기구(오븐기, 컨베이어형 토스터, 소형튀김기 등) 보급(지속)
- 군 급식의 국내산·지역산 사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한 구체적인 지침 작성('23.)
- '지역 인증제 획득 시 군납 간 우선구매 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강원도)와 협업('23.~) 추진
- 군 급식 조달체계(MaT)* 개발 추진(~'25.)

* 장병급식 조달시스템(MaT) : '선 식단 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 위해 학교급식 시스템 벤치마킹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근무 여건 보장 및 시설 확충>

-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근무 여건 보장
 - 군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군 인력의 확대 추진
 - 일·가정 균형 기반 조성을 위한 군 어린이집 확충
 - 체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여성 필수시설(여성전용 휴게실, 수유시설 등) 추가식별·확보 지속
- 군 어린이집 확대

* 단위(개소)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161	162	165	166	166

초 안

- 여성 필수시설 확보

* 단위(개소)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246	289	175	219	228

4. 교육을 받을 권리

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 적정 수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② 장애인 교육환경개선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강화
 - 장애학생의 흥미·적성·진로성향 등을 파악하고,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직업 탐색 및 체험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의 취업성공 및 직업유지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장애대학(원)생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 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병행
 - 수업 중 활용 영상물 제작 관련 장애인 편의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초안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중기계획 수립 및 관계 부처(기관) 합동 연차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③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 학교 주변 불법 유해시설의 이전·폐쇄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단속(연 2회) 및 시·도 교육청별 자체점검(수시) 실시
-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 추가 검토

*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교 설립, 개발·정비사업, 21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④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범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기존 초·중학생)
 - 학업중단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 정보를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체험활동 및 또래 소통이 가능한 전용공간 확대
- 비대면교육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령별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프로그램 등 개발
- 진로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직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추진 및 전문적인 직업교육훈련(내일이룸학교) 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생활기록부’ 적용 대학 확대 추진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파견 지원(∼'27.)
 - 기존 1인 강사 파견 지원방식 외에 학교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 구조 다각화 추진(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등)
- 아동·청소년 수요 및 사회 변화에 알맞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우수 프로그램의 지역 확산을 위한 워크숍 등 운영(∼'27.)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강화 지속 확대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선제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미디어교육원(종합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 작동원리를 이해하며, 미디어를 비판하는 능력,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아동·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미디어교육 행사 운영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학부모 연수 실시
 -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 확대
 -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밀착형,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교육 실시
 - 미디어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수업지도안 및 미디어교육교재 개발 등

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초 안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어울림마당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강화

※ ('23.)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16개 시·도 및 110개 어울림마당

-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확대 추진
- 청소년단체 국외역사체험, 청소년포럼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추진

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다각화) 기술 진보 및 장애 인구 특성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노인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 등 생활체육 지원 다각화

* 전체 등록 장애인(265만 3천 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140만 2천 명) 52.8%('22. 등록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장애인 체육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참여 확대(~'27. 18개소)
-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노인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체육교실 지원(매년 100개소),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체육 축제 개최(매년)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재가·중증·고령층 장애인 등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27. 1,000명)
 - * 반다비 체육센터에 지도자 배치를 통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금 인상(~'27. 12만 원), 수혜자 확대(~'27. 3만 명), 가맹시설 확대(~'27. 5,000개 이상) 추진
- (장애인체육 접근성 제고)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 참여 확대

초 안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확충(~'27. 150개) 및 반다비 체육센터 중심 장애인 생활체육 원스톱 서비스 제공(용품, 프로그램),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27. 22개소)
- (접근성 제고)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운영 확대(매년 60회), 유희 시간대(오후·야간·휴일) 학교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개방(매년 10개소)

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속 운영
 - 어르신 대상 문화활동(공연, 동아리, 교육 등) 및 사회활동(세대교류, 사회문제 해결 등)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180개 내외 운영
- 문화활동 사각지대 어르신 대상 비대면 문화프로그램(온라인 강의·체험키트 등) 기획·운영

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과학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
 - 아동·청소년, 성인(20~40대), 실버세대까지 전 연령층을 포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체험 지원 강화를 통한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지원

< 생활과학교실 운영 계획 >

구분	지원 내용
나눔과학교실	배려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 무료지원 (소외지역,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창의과학교실	일반인(성인, 실버세대) 대상 / 유료프로그램 운영 가능

- 장애학생 대상 과학학습 체험, 멘토링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 특수교육 전담 강사 100명 신규 활동 지원으로 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강화

초 안

- 과학문화 체험의 복지 서비스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동 및 수혜자별(수혜대상 590만 명)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개인+기관’ 신청 병행 추진

< 과학문화바우처 신청단위 개선 계획 >

신청단위	수혜 대상
개인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역적 소외계층(도서벽지학교)
기관	장애인(경증),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 － ‘복지로’(복지부), ‘정부24’(행안부) 내 ‘과학문화 바우처’ 코너를 마련하여 사업 소개 및 신청연계(바우처 홈페이지로 연결) 추진
- － 전국 과학관 주요 프로그램 연계 및 현장 과학체험형 과학콘텐츠 확대 제공

- 과학문화 종합체험 서비스 ‘두드림 프로젝트’ 지원

- － 이동형 과학차량(‘가칭’ 싸이휠)을 신규 제작함에 따라 싸이휠을 활용한 이동형 과학관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과학체험 서비스 제공

* (기존) 전시물 위주 실내 전시→(‘23.~’27.) 신규 이동형 전시콘텐츠 개발 및 과학공연, 교육 등 서비스 확장

-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및 이용 편의 강화

- － 최소한의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금액 상향
- －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카드 이용 지원 등

-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

- － (가치봄 영화 제작·상영) 장애인용 영화(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사전제작 지원 및 영화관 상영회 진행으로 장애인 영화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영화관 접근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온라인 관람 지원 병행
- － (장애인영화제 개최지원) 매년 가치봄 영화제 개최 지원(장애인용 영화 및 장애인 소재 영화 상영, 장애인 영화인 제작 작품 상영 등)

초 안

－ (동시관람 환경 구축) 폐쇄상영 시스템* 정착을 위한 연구 및 현장 배포 등 지원

* 보조기기(화면·음성해설)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관에서 동시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

●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 기반이 취약한 국민 적극 발굴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군 장병, 수형자,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등 대상별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 지원

●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구에 대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별 다문화 가구 특성에 맞는 도서관 문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연 100개관 이상)

● (큰글자책 보급) 급속히 확대되는 우리나라 노인층의 독서 문화욕구 지원

－ 50대 이상 국민이 선호하는 도서를 선정, 큰글자책으로 보급(연 20여종 내외)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지속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지속 실시를 통한 일반 대중의 박물관 인식 전환 및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

－ 대상 : 국립중앙박물관(11개 지방박물관 포함),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등

⑥ 지역문화기반 구축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지속 추진(매년 60여 개관)

※ 「도서관법」 전부개정('21. 12.)으로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가 '22년 12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사전평가제 추진·운영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전국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22시까지 연장운영하여

초 안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평가인증제 시행
 - '23년 지원계획 : (사전평가) 25 개관 내외, (평가인증제) 116 개관(2~12월 시행) 예정
- 지역·사립박물관에 학예·교육 인력 지원
 - '23년 지원계획 : 학예·교육 인력 각각 90 개관 지원

⑦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 문화도시 지정 지속 추진(∼'23.까지 1~5차 문화도시 지정)
-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배치 계속 추진
 -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 실시(연 300명)
 - (지역문화 전문 인력 일 경험 지원) 지역 문화기반시설(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에서 일 경험 지원(연 70명)

※ 인건비(월 220만 원/기관 50% 부담 / 2년) 및 프로젝트 비용(인당 300~500만 원) 지원

⑧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지속 추진) 지역문화공공기관(20여 개소) 기반 문화 간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속 지원으로 타문화 간 상호이해 도모
-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및 사회 각층 전문 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다양성 가치 확산
 - 중·고등 문화다양성 교과서('문화다양성의 이해') 배포 및 활용 지원
 - 교원·문화기관 종사자·콘텐츠제작자 등 주요 전문 인력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해 다양성 가치 확산의 매개인력 양성

초안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확대) 대국민 문화다양성 가치 홍보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축제형 행사·캠페인·포럼 등 프로그램 강화로 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 (정책 모니터링 지속 추진) 법정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등 정책 모니터링 통해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체계 강화
 - －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 문화창조 및 향유 활동에서의 다양성 등 문화다양성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 * 「문화다양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년 주기 실시 의무('20., '22. 조사 추진)
 - － (국가보고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통해 국내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적 조치(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를 모니터링
- ※ 협약에 따라 4년 주기로 제출('14. 1차, '18. 2차, '22. 3차 제출 완료)

⑨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2. 9.) 본격 시행 및 교육지원 확대
 -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정착 및 가입 편의 제고
-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 여건 개선
 - － 신진예술인 등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
 -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금융지원 강화

⑩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영화)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영화산업 지원 사업(모태펀드* 영화 계정 투자 등) 심사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및 심사 시 우대 등 활용 확대 독려

초 안

* 개별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 국내에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일컬음

-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정부 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만화) 웹툰 작가·사업체 대상 불공정계약 실태조사 및 웹툰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23.~)

⑪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단기) 전국 주요도시의 유관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해 교육·상담하는 '공익변리사 지역상담서비스' 운영
- (중·장기) 지역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익 변리사 지역사무소 운영 검토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역사무소 운영방안 >

- (구성) 지역사무소마다 변리사 3~5명, 행정직원 1~2명 배치
- (업무) 지재산 상담·설명회, 담당 지역의 출원서 작성, 심판·소송 대리 지원, 경제적·사회적 약자 관련 단체·기관 및 발명교육센터에 교육 제공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관명칭을 '지식재산 법률지원센터'로 변경 추진
 - (주요 지원업무) 산업재산권 상담, 출원·심판 서류작성,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대리, 산업재산권분쟁 컨설팅·법률자문,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관련 상담·자문
-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시, 지식재산권분쟁대응센터와 협력하고, 특별사법경찰관수사 및 행정조사 연계 지원 추진
- 지식재산 법률구조 수요 증가 시 '지식재산 법률지원센터'를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 검토 및 추진

⑫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신속한 통합 저작권 침해대응체계 마련
 - －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분석하는 종합시스템 구축
 - －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마련) 침해 종합대응시스템과 저작권 유관기관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연계, 모니터링 범위 확대
 - － (장르별 모니터링 확대) 최근 급성장한 웹툰, 웹소설 등 장르별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이슈 발굴 및 실태 분석 강화
-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선제적 예방
 - －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대응) 현실세계의 콘텐츠가 가상세계에서 재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의 예방 안내서 발간
 - － (침해예방 홍보) 해외 불법사이트 및 폐쇄적 커뮤니티 사이트 단속의 한계를 고려, 인식개선 중심의 침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 － (인터폴 중심 국제협력 강화) 인터폴 협업사업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강화로 온라인 침해 대응력 제고 및 국제적 접속차단 협력망 구축
 - － (국제적 수사 네트워크 다양화) 인터폴 사업 등에 참여한 주요 침해지역 관계자와 지속 협력하는 별도 공조체계 구축
- 초·중·고등학교 저작권 교육 강화 기반 조성
 - － 사회 및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춘 저작권 교과목 개발, 체계화 등 연구
 - － 시·도 교육청 담당자,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대상 전문연수 추진을 통한 저작권 교육 협력 강화

초안

- 대학 내 저작권 강좌 운영 고도화
 - － 협약 대학이 교양 및 전공으로 저작권 강좌 개설하여 저작권 지식 함양 지원
 - － 일반대학 및 예술계 전문대학의 음악, 미술, 콘텐츠, 미디어 등 문화예술 관련 강좌에 저작권 특강 추진
- 전 국민 맞춤형 저작권 교육 확대
 - － 청소년, 공공부문, 문화예술인, 대학, 기업 및 단체 등 맞춤형 교육 확대
 - －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대상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및 유관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
- 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
 - － 저작권 브랜드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작·매체 송출과 소통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 SNS 채널별 특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정책 인지도 및 선호도 제고
 - － 청소년·대학(원)생 저작권 공모전 개최·운영, 월간 '저작권 문화', '계간 저작권' 발간
- 저작권 전시체험 환경 구축 운영
 - － '한국저작권체험관' 내에 전시체험환경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창작체험과 전시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23.)

⑬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개선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양성,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서비스 제공 및 스포츠클럽 제도 정비
 - － 다양한 수요자에 맞는 전문성 있는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시군구 체육회 배치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초안

체육지도 활동 지원

- 「스포츠클럽법」 제정('22. 6. 16. 시행)에 따른 등록 스포츠클럽 및 지정 스포츠클럽 제도 시행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①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 양육자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 양육자의 휴식보장 및 양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거점 양육지원 기관 제도 도입 추진 및 수요자 맞춤형 부모교육 체계 마련

②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
-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 신축 방식과 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사업방식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비 예산을 적극 지원

③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속 지원

초 안

<양육 부담경감 및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읍면동 단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확대 추진

※ 전국의 만0~9세 아동 300명 이상 읍면동 총 2,165개(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의무 설치)로 2,200여 개 까지 확대 필요

-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중앙부처의 사업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공간 확보, 민간의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한 설치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 (정부 지원 확대) 돌봄공백 가구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정부 지원 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 이용자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도입 검토

※ 「소득세법」59조의 4를 개정하여 본인 부담 비용을 특별공제 항목으로 추가

- (질적 수준 제고)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검토,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검토

④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가족친화 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지속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

－ 사전컨설팅을 통한 인증제 지원 확대 및 사후컨설팅을 통한 제도 내실화

- 가족친화 홍보 및 인식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인식개선

초 안

-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상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 홍보 강화
- 자율실천 목표제 운영 등을 통한 가족친화 최고기업 역할 제고
-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대응하려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민간 자율적 가족친화문화 확산 기반 마련

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 선정 시 복지급여 지급기준(소득·재산 기준) 상향
-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 ※ 소득기준 상향 시 아동 양육비 지원인원 약 2만 명 증가 전망(20만 명 → 약 22만 명)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이행률 제고('23. 42%→'27. 55%)
-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어도 행정정보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회 근거 마련 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추진>

-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2. 10.~)에게 아동 양육비 연 420만 원(월 35만 원×12월),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지원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별로 약 20~30여명의 자립의지가

초 안

강한 청소년 한부모를 사례관리*하는 ‘자립지원 패키지’ 추진

*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정보 안내 및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등 밀착 사례관리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강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개선 추진
 - 자녀특성별·기능별 시설 유형 개편 및 유형별 시설 입소기간 조정을 통해 임신·출산·양육·자립 등 한부모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주거 안정 지원
 -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 운영기관 및 신규 주택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

<미혼모·부의 보호 지원 강화>

- 미혼모·부 초기지원(전국 19개소)을 통한 재가 미혼모·부 대상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제공, 출산·양육지원 실시
- 가족희망드림 지원 사업(전국 98개소)을 통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대상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 정부서비스 연계, 자녀 학습지원, 위기 시 긴급돌봄 및 가사정리 등 지원
- 미혼부 출생신고 전 자녀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

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이행법률안 국회통과 및 입양제도 개선을 통한 협약 비준 추진
 - 법률 제·개정 지원을 위하여 입양 절차 등 주요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수행 역할 등 관련 관계 부처(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및 관계기관(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간 추가 논의
 - 입양절차 개편에 따른 입양기관 기능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모색

초 안

⑦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23. 18개 가족센터→'24. 모든 가족센터)
-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이므로 입법과 법 집행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시정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함.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적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실질적 이해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요청함. 특히 사회적 약자의 개인적·사회적 취약성은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저해하므로,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인권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함.

1. 평등 증진

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

- 장애,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 예방 및 시정 등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파견법」등

- 고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②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 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실시
 - －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특정 성별 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정책 개선 추진
- 성별 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 － 신규 승인 통계, 주요 정책 분야 통계 등에 대한 성인지적 점검·개선
- 국가 및 지방 성평등지수 측정·발표
 - －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성평등 수준 진단 및 취약분야 개선 등을 성평등 정책 수립에 활용

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의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제출케 하여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 지속 추진
 - － AA 대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남녀고용평 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 지속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도입·확산 지원
 - － 현장 직무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 － NCS를 활용해 중견·중소기업 직무를 분석·재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능력중 심 인사관리시스템(채용·훈련 등) 도입 지원
- ※ '22년 기업컨설팅 700건 추진

초 안

④ 성별 대표성 제고

<정부위원회 관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참여 개선
 -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연 2회),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연 1회) 위촉직 위원 성별참여현황 조사·발표 및 법정기준(40%) 미달 위원회 개선 권고

<여성 인재풀 확충>

- 여성인재 발굴 및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 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활용도 제고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재자 사후 관리

<성별균형 포용성장>

- 기업의 성별다양성 제고 및 일·생활 균형을 맞춘 조직문화 형성 방안을 제안하는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팅’ 제공

⑤ 양성평등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게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 성평등한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방송 분야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추진 및 문화 확산 지원
 - 학교급별·교과별로 학교 현장에 적합한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및 교수학습 자료 지원
 - 교원연수 및 네트워크 조성 등 다양한 교육활동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

⑥ 국어사전의 성차별 내용 개선

- 사용자 의견 및 내부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성차별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추진
- 표준국어대사전 개편('22.~'26.)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 표제어, 속담, 뜻풀이, 용례 등을 정비하고 올바른 용법 제시

⑦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 인권침해,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 등에 대한 심의 및 위반 방송사 제재 지속 추진
 -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
- 인권보호, 양성평등 관련 심의사례에 대해 방송사 공유 및 심의책임자회의 등을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 강화 지속 지원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혐오와 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3.~'25.)
 - － 교·강사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매년)
-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시행
 - － 혐오·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 시행(매년)
 - － 혐오·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심층 기획취재 지원 실시(매년)
 - － ‘뉴스읽기 뉴스일기’*, ‘체커톤’** 공모전을 통해 혐오·차별 인식개선(매년)
 - * 전 국민이 뉴스를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모전
 - ** 팩트체크와 마라톤을 결합한 말로, 청소년의 분별있는 뉴스 소비 및 정보 소비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공모전
 - － 미디어교육 온라인 연수원(가칭)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미디어 리터

초 안

러시 교육용 캠페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확산('23.~'27.)

- 6개월 미만의 수습기자 대상 관련 연수 시행
 - ‘장애인 보도, 언론과 인권’ 등의 연수 실시
 - 수습기자 교육 시 혐오 및 차별인식개선 분야 필수 편성 시행
 - ※ '20년 41건(124명), '21년 43건(279명), '22년 19건(239명)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 등을 통한 경력기자 전문연수 시행
 - ‘혐오표현과 미디어의 역할’, 언론보도 속 ‘차별과 혐오’, ‘낙인과 편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 연수 과정 개발
 - 혐오표현 관련 법률 이론강좌, 취재 현장 실태, 개선방안 등
 - 난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 인권보도 우수사례 등 공유 및 확산
 - ※ '20년 14건(396명), '21년 13건(238명), '22년 12건(226명)
- 혐오 및 차별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언론인 연수·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 ‘이제는 그만, 고쳐야 할 부적절한 표현’ 등 장애관련 보도특강 등 사회적 약자 온라인 연수 VOD 서비스 제공
 - 최신 이슈별 교육 콘텐츠 개발로 언론인 현업 활용도 제고 및 혐오 차별 인식개선

⑧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지원

- 시민사회의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활성화
 - 대중매체 내용분석을 위한 민간 협력기관 운영 지원
- 시민 대상 미디어 인식개선 지원 강화
 - 성평등 미디어교육, 캠페인 등 시민의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 지원

2. 여성

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분석평가, 주요 정책 이행점검 등 여성폭력방지정책 이행력 제고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기관장에 의한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제재 조치 마련 등의 대응체계 내실화 및 조직문화 개선

- 차질없는 「인신매매방지법」시행('23. 1.)을 위한 인신매매방지 정책기반* 마련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운영 추진

* 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 식별지표 고시·활용, 정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중앙 및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운영 등

- 여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공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여성폭력 통계 생산 등 정책기반 강화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의 여성 피해자에게 일어나는 복합적인 폭력피해*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통합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 스토킹+데이트폭력 / 가정폭력+디지털 성폭력

- 이주여성 상담소를 통한 모국어 상담지원, 의료지원, 통·번역 지원, 고용·채류에 관한 상담,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이주여성 보호

*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초 안

- 신종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 － (사이버성폭력 대응) 위장수사 등 수사기법 다변화 및 사법처리 강화, 유관기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 공유, 피해자 보호 강화
 - － (반복신고 대응 강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신고에 대해 신고이력을 면밀히 살피고, 긴급 응급(임시) 조치 및 잠정(임시) 조치 등 적극 시행
 - － (수사 인프라 확대) 스토킹 등 신규업무를 감안하여 여성청소년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인권친화형 조사환경개선사업* 추진
- ※ 가해자·피해자 동선 분리, 피해자 전용 지원공간 마련, 사무·조사공간 분리 등
- － (법률 제·개정)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현장 법 집행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등 개정 추진
- － (내·외부 협업) ‘여성청소년기능 전략협의체(내부)’, ‘여성안전 정책자문단(외부)’ 등의 운영을 통한 여성폭력 및 아동 및 청소년 안전 점검·보완
- －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개선)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위험도 등급을 세분화하여, 등급에 따라 맞춤형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보호체계 고도화
-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장비 개선) 스마트위치 확대 및 안전조치 장비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내실화
- ※ 스마트위치 확대 보급, 스마트위치 통화음 ‘무음’ 자동복귀, 인공지능 CCTV 도입 등
- 유관기관 협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반의 여성안심환경 구축 지속
 - － 여성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에 경찰이 참여하여 CPTED 기법 적용
 - －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통해 민간의 치안활동 참여 확산과 자발적 참여의지 견인
- (현장교육 강화) 가정보호사건 조사 시 피해자에게 가정보호사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사건의 중대성, 주변정황, 신고이력, 재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 또는 형사처벌토록 현장교육 강화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 지원 인프라 확대
 - －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23. 추가 10호) 및 남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지원('23. 각 1개소)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 강화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피해자의 접근성 제고 및 편의 증진
 - － 장애인 피해자 특화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 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금,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 예산 지원 확대 추진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민사·가사·형사사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지원사업 지원 확대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해자 수요에 맞는 법률·의료·자립지원 등 유관기관으로의 신속한 서비스 연계실시
 - －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촘촘한 의료지원 서비스 내실화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탈성매매 여성 보호·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 피해 여성에 대한 의료·법률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내실화
 - － 상담원 등 인적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 －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자립·자활 지원 강화

초 안

- 성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19.~25.) 등을 계기로 성매매 예방·방지를 위한 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 배포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고위직 대상 교육 관리 강화 등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명단 공표
 -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 공공부문 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활성화 추진
- 맞춤형 콘텐츠 및 다양한 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지원
 - 수사 과정 등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경찰, 검찰, 근로감독관 등) 대상 교육 지원
 - 초·중·고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폭력 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 지속 추진

<수사관 전문성 강화와 점검체계 구축>

- (수사 매뉴얼 개선)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절차 및 단계별 조치를 중점으로 매뉴얼 개선
 - 신고접수부터 수사 종결까지의 단계별 조치, 현장 주요 Q&A, 우수 수사사례, 2차 피해사례 및 유형별 최신 판례 등 수록
- (현장점검) 경찰청 주관 현장점검, 각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자체 점검 등으로 촘촘한 수사 점검체계 구축

초 안

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 양성평등교육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 － 농업 분야 및 농촌지역에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교육 인원(명) : ('19.) 2,500→('21.) 3,300→('22.) 3,600→('25.) 4,100

- 농촌특화 성평등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성평등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 － 농업·농촌 성평등 실태, 농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농업·농촌 성인지 감수성 제고

※ 농촌특화형 성평등 강사 육성(명) : ('21.) 34→('22.) 42→('23.) 40→('26.) 70

- 정책위원회 및 농협의 여성 참여 확대로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 －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권한 향상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유지
 - －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을 지속 확대*하여 농업인 생산조직을 대표하는 농협에서 여성농업인 의견 반영

* '21년 10월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 33.5%,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9.0%

※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에 여성 이사 선출 의무화(「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8항)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부담 경감 및 정책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확대실시

※ 영농여건 개선 교육인원(명) : ('20.) 2,600→('21.) 9,100→('22.) 10,000→('25.) 12,000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초 안

- 농촌지역 어린이집 감소 및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이 증가하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농촌여건에 맞는 소규모 보육시설 지속 확충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촌에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농촌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 여성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2.~’26.)’ 시행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대상을 여성어업인 전체로 확대(’24.~계속)
- 어업활동·어촌 생활돌봄 지원제도 확대
 - 어업활동 대체인력 및 어촌생활 돌보미 인건비 인상 추진
 - 여성어업인이 도우미 지원제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③ 여성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 지속 개최
 - 양성평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속 운영
-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등
 - 예술인 자녀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지역 확대 등 추진

④ 모·부성권 강화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감독(스마트근로감독 등) 지속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부모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 운영

지속

-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분할 사용횟수 제한(현행 1회) 완화 검토('23.~)

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법 제정·시행
 - －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여 법률에 근거한 스토킹 예방 및 안정적 피해자 지원 기반 마련('23. 1. 17. 제정·공포, '23. 7. 18. 시행)
 - －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책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추가
- 피해자 중심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강화
 - －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및 안정을 위하여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긴급 임시숙소*·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 * 긴급 임시숙소(10개소) :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 7일 이내 긴급보호
 - ** 임대주택(5개소) : LH 등 임대주택 활용, 3개월 내·외 주거지원
 - －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심리지원 과정으로서 전문상담·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17개소 시범운영)
 - －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 개발·보급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연구 및 개발·배포 추진
 - －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사항 안내, 스토킹범죄의 심각성 소개, 초기신고 유도 등

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23. 1.)에 포함된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생식독성 노출 사후관리,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임신중절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 여성 및 태아 건강권을 위한 난임시술 통계 관리 지속 및 영유아 건강지원제도 등 여성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과제 지속 추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의료기관 등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 대상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복지로·보조금24 온라인 신청 기능 추가 등(’21.)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을 확대하고 이미 지정된 7개 기관의 순차적 운영 개시
 -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운영

3. 아동·청소년

①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의 욕구 변화를 반영하며 데이터 시스템화가 가능한 전국 청소년활동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 전략계획(ISP) 예산 확보 추진(’24.~)
- 코딩, 드론, 영상·미디어 제작 등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

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의미, 청소년 수련시설에 개소되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

초안

** 방과 후 아카데미(개소) : ('21.) 332→('22.) 342→('23. 이후) 350 이상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수혜 대상 청소년(순 인원 기준) 확대*

* ('21.) 13,145명→('22.) 14,059명→('23. 이후) 14,500명 이상

- 청소년 체험활동 주요 프로그램으로 코딩, 컴퓨터 활용, 드론, 로봇, 영상·미디어 제작 등 '디지털 체험활동'을 강화

③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상담 활동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설치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지속 추진
 - 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수 지원 등 학생 상담 내실화
-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위(Wee) 센터 정신과 전문의 지정을 통한 심리치료 및 자문 지원
 -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과 학생 간 1:1 화상상담(랜선 위(Wee) 클래스) 시스템 운영 및 지원

④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24시간 학교폭력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지속 운영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즉시 신고·접수하고, 폭력 유형별 지원 연계
 - 온·오프라인에서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 보호 윈스톱 온라인 지원시스템(App) 개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중심의 또래활동 활성화
 - 친구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함께 성장·발달해가는 또래상담학교

초 안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

-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
 - －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방어자 되기’ 등 교내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실시 및 운영사례 발굴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학생 지원기관 설치·지정 확대 및 내실화 지속 추진
 - －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전국단위 피해 학생 전담기관, 통학형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 학생 지원기관을 설치·지정하여 피해 학생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보호·상담·치유 지원
 -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보호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수자료 보급 및 피해 학생 상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일반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 실시

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및 인식개선
 - － 교사, 의료인 등 직군별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교육 확대
 - －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긍정양육 129’* 원칙 홍보 강화
 - * 1 기본전제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이다.
 - 2 기본원리 : 긍정양육은 부모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며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이 필요하다.
 - 9 실천원리 :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 개입
 -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사전 예측·발굴하고, 필요서비스(드림스타트, 복지급여 신청 등) 제공 및 학대 신고

초 안

-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현장 방문 시 활용되는 체크리스트 개선을 통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현장 방문 운영 효과성 제고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
 -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인프라 지속 확충
 - * 아동보호전문기관(개) : ('22.) 95→('25.) 120 목표
 - ** 학대 피해 아동쉼터(개) : ('22.) 141→('25.) 240 목표
 -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자문, 피해 아동 치료 등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확대
 - ※ '22년 8개 기관 시범사업 실시, '23년부터 17개 시·도로 확대
 - 피해 아동 및 그 가정의 기능회복과 가정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집중 사례관리(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지속 확대
 - ※ '22년 27개 기관(1,000가정) 시범사업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 운영 활성화, 심리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기관 전환('23. 10.~) 역량 강화 지원
- 대응체계 공고화
 - 원 가정에서 분리된 피해 아동의 성별*연령**장애*** 유무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생활 가능한 맞춤형 인프라 확대
 - * (성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학대 피해 아동쉼터 2개소(남·여)씩 총 240개소 확충(~'25.)
 - ** (연령) 만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위기아동보호가정 운영('21. 4.~)
 - *** (장애)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신설('22. 6개소)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을 독려하고, 배치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문직위 지정 권고 등을 통해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교육(보건복지부·법무부 협업) 및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개정*·배포 등을 통한 협업 활성화

초안

* 장애아동 조사·사례관리 과정에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아동학대대응체계 간 협업방안 구체화 등 보완 예정

⑥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 증진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체육계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립 추진
 - 조사관·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체육계 사건 접수·조사 및 상담
 - 의료·정서심리·법률·체육활동 비용 등 지원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 체육 현장 인권감시관(‘인권살피미’) 운영, 체육인 징계이력 관리 및 활용(징계정보시스템) 등
 - 다중매체를 활용한 스포츠인권 홍보 강화(홍보대사, 전광판, SNS, 마스크트 활용 등)

⑦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3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행동 지침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한 업계 대상 교육 강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4,000여 명) 등록교육(40시간) 및 법정교육(최초교육 1년 6시간, 연간교육 1년 3시간) 과정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관련 교육 내용 신설
 - ※ 교육내용 : 대중문화예술산업 개론, 직업윤리와 법령, 실무사례, 위기관리, 세무실무 등
- 우울증·자살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획사 또는 연예인의 신청 시 전문상담사가 방문하여 1:1 상담 진행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 전문강사가 기획사 또는 예술고에 방문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연습생

초 안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스트레스 관리, 인성 등 교육(1회 1~4시간)

⑧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주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추진
 - － 랜덤채팅앱을 주기적 점검·단속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형사고발 등 조치
 - － 랜덤채팅앱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여 불건전 만남 유도 게시물, 음란·성매매 정보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삭제 유도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 및 역량 강화
 - － 중앙지원센터를 통한 종사자 교육, 센터 간 네트워크 관리 등 운영역량 강화
 - － 피해자의 심신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의료·학업·자립 프로그램 운영
 - －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검찰 조사 시 상담전문가 동행 등 법률지원
 - － 보호자의 성매매 피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정대리인 교육
 - －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피해 아동·청소년 적극 지원 및 성범죄 피해예방활동 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신고 연계
 - －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의 성매매 유인행위 의심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온라인 성매매 의심 신고

⑨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등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전화 1388’ 상시 운영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강화
- 청소년지도자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청소년동반자 배치 확대를 통해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⑩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지속 확충
-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권리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제고

* 교육내용 : 학교폭력, 근로권익(최저임금·청소년근로권 등), 국제인권(세계인권선언·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 인권, 양성평등,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

⑪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급별, 수준별, 역량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어울림’) 지속 운영
 -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사회성·정서 역량과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인식 제고
 - 학부모의 자녀이해 및 학교폭력 예방 이해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소식지 배부, 교육자료 제공 및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연수
-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성 제고
 -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원격연수 지속 운영
 - 교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 업무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인력 충원 등 지방자치단체 요구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설득을 통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추진
 -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주요내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
 - * 국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함
 -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시행 이후 출생등록 시스템 구축 및 지속 보완
 - － 출생통보제 도입 시 연계 방안 검토(「가족관계등록법」 개정*)
 - *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개정안 제44조의3 신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함(개정안 제44조의4 신설)
-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을 통해 아동 인권정책 수립 지원
 - － 월·분기별 및 연간 기준 인구동향 통계의 생산과 서비스를 지속하고 개선
- 연간 인구 동향 통계 작성 및 서비스 추진
 - － (매년 2월) 출생·사망 통계(잠정) 공표, (매년 5월) 영아·모성 사망 보완조사 실시, (매년 8월) 출생 통계(확정) 공표, (매년 9월) 사망원인 통계 공표, (매년 11월) 다문화 인구동태통계(출생·사망·혼인·이혼) 공표

⑬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및 공적책임 강화>

- 공공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초 안

- 돌봄위기가구 아동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자문 및 직무교육 등을 제공하는 현장 슈퍼비전체계 구축

⑭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 외국인 아동의 교육, 생활지원 및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추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2조의2 개정 추진)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 적극 지원(∼'23.)
- 출생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세부 시행계획 마련('23.∼)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신청과정 및 출생증명서 상의 정보로 체류자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및 출생등록정보시스템 구축
- 출생등록 제도 시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생등록번호 활용 정책 마련('24.∼)

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게 아동 권리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지속적 훈련 제공>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지속 실시
-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아동권리 보장, 소년사법 등 법 교육 직무연수 실시

<비행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도교육 프로그램 강화>

- 학교·경찰·검찰·법원 등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 의뢰한 위기청소년과 보호자대상 비행예방교육 실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관리 강화
 - 경찰·검찰·법원 등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대상 초기면담을 강화하여 자료를 생성

초 안

하고, 소년처우단계 전반에 활용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경제지원, 시설보호 등 사후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 및 조직화
- 멘토링 연계 등 지속적 개입으로 비행예방 강화
- 비행초기 선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경찰선도제도 운용 실태 점검 등 활성화 지원 및 운영 예산 확충
 - 경찰청·국회·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비행 초기 적극적인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선도제도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우범소년 제도 개선>

-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하는 「소년법」개정 지속 추진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에 ‘우범소년 제도 개선 추진’ 과제(법무부 주관)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완책 마련 추진

⑯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 실효성 있는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실시 및 시설·그룹홈 등 종사자, 시설 퇴소 당사자 등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로드맵 구성을 위한 추진과제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수렴 추진
-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계획 마련
 - 가정형 보호 활성화, 시설 기능전환·소규모화, 그룹홈 확대 및 환경개선 등 추진

⑪ 청소년 성교육·임신·출산·육아 지원 보장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계속하는 동시에 교육 매뉴얼 개선 및 강사 역량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 이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지원 대상 선정 시 아동양육비 지원(소득)기준을 현행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5% 이하로 단계적인 상향 추진('23.)
-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패키지*(사례관리) 추진('22. 하반기~)

* 상담 및 각종 복지정보 안내, 주거 및 자녀돌봄, 양육비이행 등

⑫ 아동참여와 아동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참여를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영향평가 시 아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의견청취 여부 등을 평가
- 아동총회 등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시된 정책개선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정책이행 모니터링 실시

⑬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아동권리 우선순위 반영

- 'KOICA 인권 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1.~'23.)'의 15대 실행과제를 계획대로 이행
- 인권분야 사업 인권지표 개발, 인권분야 사업 발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KOICA 인권분야 중기전략('21.~'25.)' 수행

4. 장애인

①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보호

-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이행 여부 확인
-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후보군 마련 등 인권지킴이단원 후보자 추천 과정을 개선하여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학대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하여 조사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연 2회 지방자치단체 점검)
 - 정부의 인권실태조사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권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

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 양질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소외된 장애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 지속적 추진
- 지원금액 상향 등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확대

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지속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기인원이 발생하여, 지원 대상의 지속 확대 추진
 -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의 소득기준을 미충족하는 가정도 본인 일부 부담 하에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인원과 돌봄시간도 지속 확대 추진
-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상자 지속 확대 추진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및 부모상담지원사업의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④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활동지원 및 지원 대상의 지속 확대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확대
-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 해소 및 활동지원사 매칭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추진
-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제공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법정수당 지급 등을 고려한 서비스 단가 인상 지속 추진
-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감염병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시간 활동지원,

초 안

긴급활동지원, 장애학생 추가지원 등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추진

<장애인 자립 관련 정책지원 강화>

- 장애 정도·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주거·돌봄 등의 통합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2.~'24.)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지원 추진
 -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장애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및 대상자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등 결과를 검토하여 '25년 본사업 전환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별 다양화 등에 관한 연구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예정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자립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24.)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24년 6월 확대 추진
 - * 주간에는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 제공('22.~'24, 42억 원,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20명 대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대상자 및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고령층·농어촌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모형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원 강화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산정특례 지원 및 만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지속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
-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활동지원사 보조직무 등과 같은 중증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 확대

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 '23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보행약자가

초 안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의 고도화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UD)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UD 아이디어 대전(3월), 인식개선을 위한 DK 페스티벌*(10월),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0월), 전시·체험공간 운영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다양한 홍보활동

* 디자인 코리아(Design Korea) 페스티벌 : 디자인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디자인 축제

- 1역사 1동선 확보를 통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승강기 설치 지속 추진
-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상향*('23. 7.)하고, '26년까지 상향된 법정대수 100% 달성 추진*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개정 예정(입법예고 '23. 1분기, 공포 '23. 7.)

-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상시이용 등을 위해 운영비 국비지원 추진*
-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확대

* 현행 :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50㎡이상만 편의시설 설치의무 부여

** 현행 : 건축물의 일부 용도(서점, 세탁소, 탁구장 등)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

- 공중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의 BF(Barrer Free) 인증제 의무인증 범위를 현행의 초고층건물, 지하연계복합건물에 더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영화관을 추가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 추진
 - － 적극적인 홍보, 안내 등을 통하여 지원 실적 증가 도모
 - － 국선변호사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전문교육 실시하여 법률조력 전문성 강화
 -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
- 진술조력인을 통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강화 추진

초 안

- 장애인 의사소통에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 장애인 진술조력 사례 공유 및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전문교육 실시
- 장애인 진술조력 관련 업무 매뉴얼 개선 추진

⑥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 장애 인식개선의 교육 현장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전체교육 인원 대비 실 교육인원 집계, 대면교육 의무화 등 교육 질 관리
 - 기관평가 반영, 교육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 실효성 확보
- 교육 콘텐츠의 다변화
- 표준교안을 중심으로 한 이러닝교육 활성화, 학습 사용 도구·교재 개발, 문화예술 접목 교육 등 교육의 전문성 강화
- 효과적인 교육 연계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확대 및 전문강사 양성체계 내실화
- 대국민 홍보(장애공감문화) 강화를 통하여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⑦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지속 추진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1. 11.~’22. 10.)를 통한 평가 및 대안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간 연계 강화

⑧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계획’* 수립(’25.)

*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토대로 ’00년부터 5년마다 편의 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⑨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상담 전담인력 지속적 확대
- 피해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남·여 분리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지속적 확대
- 장애인 학대 신고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학대사례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보호
- 장애인 학대 예방 온·오프라인 홍보물 개발 및 정책통계자료 구축
- 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과 경찰청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지속적 서비스 개선
-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와 사례집 등 발간을 통한 홍보 및 교육 강화

⑩ 장애인고용 개선

-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수요자 중심 교육 인프라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교육 내실화 도모
 - － (이러닝 시스템) 이러닝 시스템(’22. 12. 구축) 정식 운영에 따른 온라인 교육 제공
 - － (콘텐츠 확대) 모듈형 콘텐츠*, 원격교육 콘텐츠 등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확대
 - * 수요자가 교육환경(업종, 장애인 고용현황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수강
 - － (문화체험형 교육 확대)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위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

초 안

※ 악기, 공연, 합창, 연극, 뮤지컬 등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과 연계한 인식개선 교육('20.~)

('22.) 8개소, 13억→('23.) 8개소, 13억→('24.) 10개소, 22억

⑪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 지방 거점별로 장애인 시험장 점진적 확대 추진

－ '23년 지방 1개소(대전)→'24년 지방 2개소(대전, 부산)→'25년 지방 3개소(대전, 부산, 광주)→'26년 지방 4개소(대전, 부산, 광주, 대구)→'27년 지방 5개소(대전, 부산, 광주, 대구, 제주)

※ 매년 응시인원, 희망지, 편의지원 유형 등이 상이하므로 유형별 장애 응시자 원서접수 현황에 따라 확대되는 시험장 위치 및 개소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23.~)

－ '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

※ 제12회 변호사시험은 중증 장애인 전원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 완료

- 장애인 시험장 운영을 위한 시험 장소 확보(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장애인 시험장 운영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 및 전문교육 실시

⑫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 (공공후견지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후견인 확대*, 후견인 활동비 인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법률 지원기능 강화

* 피후견인(명) : ('23.) 1,563→('27.) 2,763

** 후견인 활동비(만원) : ('22.) 15→('23.) 20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 재산을 관

초 안

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 실시(∼'23., 4.6억 원, 120명 대상)

- 공공후견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
-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신탁재산 사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지원

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등에 대한 거소투표 안내를 철저히 하여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
- '18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선 이후 변화와 시사점 등을 토대로 추가 개선방안 검토하되,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보다는 적용 제외 근로자 실질적 감소 방향을 우선 검토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개선을 통해 저임금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 적극 연계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회 확대('24. 3. 완공 예정)
- 서비스업(호텔, 유통, 여행 등)에서 여성 전용 특화직무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범 운영하여 확대 및 보급

5. 노인

①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강화>

- 노인학대 예방의 날(6. 15.) 행사의 확대, '나비새김' 캠페인 활성화 추진

초 안

- 노인학대의 신속한 신고를 위한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의 활성화 추진
- 학대 감지, 응급신고, 영상녹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가정·시설 내 학대 사건 예방
- 노인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중심의 인권지킴이 활동 강화

<학대 피해 노인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 인프라 확충 및 인원 확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후관리 대응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수요에 맞춘 상담, 심리프로그램 및 법률·의료·일자리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학대 사건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예방효과 확대>

- 노인학대 조사원의 역량 교육 강화 및 사례·판례집 등 전문적 자료 발간
-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단순 조사 거부, 방해, 거짓 진술 등에 대해 과태료 등의 법적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사 확보

②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보호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제공기관 제외)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23. 6. 22. 시행)
-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설운영자, 종사자, 전문가 등 관계자 협의해 하위법령 및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교육,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인권보호 교육 및 인권보호 제공>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시 인권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및 시간 확대 추진

③ 노인 건강권 보장

-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추진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케어코디네이터 시범사업 추진(안) 검토
 - 만성호흡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방안 마련
- 저소득층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 및 실명예방 추진
 - 대상자 발굴로 수술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 안과검진 등 실명예방 사업 추진
- 지속적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

④ 단체·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 문화 등 노인복지 증진>

-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노인여가시설 중심으로 노인 욕구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및 다양한 경험의 기회 창출
 -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복지관 수 확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
 - 노인복지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지원

⑤ 노인소득보장 대책 마련

- 취업역량 진단·분석 강화 및 장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취업알선 강화 등을 통해 장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고도화

초 안

- 수당수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검토
- 장년층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홍보채널 확대 및 적극적 모집·발굴 추진

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 수립 및 착수('22. 8.~)
-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재정전망 도출, 재정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연금개혁방안 마련(~'23. 10.)
 -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시행 및 연금개혁과 연계한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

⑦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 공립요양시설(병원)이 없는 시·군·구 우선지원, 지역별 수요와 현황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기관 추가 설치 지원*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 * (예시) 농어촌 지역에 수요가 많고 설치가 용이한 주야간 보호시설 적극추진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내실화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 담보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

⑧ 농지연금 활성화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가입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 농지연금 가입대상 확대
 - 배우자 승계 연령 기준 완화(만 60세→만 55세) 추진('23.)
 - 기간형 상품* 가입연령 인하(만 68세 이상→만 63세 이상) 및 지원방식 확대

초 안

(5·10·15년형→20년형 추가)('23.)

* 종신행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책고객인 고령농업인과 의사결정 보조자인 자녀세대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농지연금 인지도 및 인식도 개선

<담보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23.~)>

-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또는 임차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임대함으로써 농지 유희화를 방지하고 농업인력구조 개선 및 농지 유통화에 기여
 - (임대형상품) 농지연금 가입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액을 추가지급하는 임대형 상품 출시
 - (담보농지 매입제도) 약정해지 후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 가능한 농지는 매입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24.~'25.)>

- 담보농지의 상속 또는 압류, 제한물권 설정 등 담보농지 권리 변동에 따른 약정해지방지를 위한 신탁형 농지연금, 부기등기 제도 도입
 - (신탁형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 시 담보농지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 자동 승계
 - (부기등기*) 담보농지에 공사의 동의없이 압류, 가압류 및 제한물권 설정을 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여 타 권리 설정에 따른 약정해지 방지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6. 외국인과 재외동포

① 방문취업 동포(H-2) 지원·관리

초 안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채불이 없는 사업주에게만 방문취업 동포(H-2) 채용을 허용하여, 방문취업 동포를 임금채불 등으로부터 보호
- 사업주의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시 고용제한 조치

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

-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하여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확대
-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
- 동포의 국내 체류 관련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사증제도 개선

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강화
- 외국국적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동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④ 국외입양인 인권개선과 지원

-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뿌리찾기·국적 취득 지원
 - － 국외입양인 입양기록 전산화 추진 계속
 - － 입양정보 공개 청구제도(뿌리찾기) 시행 지속
- * 공개 청구대상 정보 : 친생부모에 관한 사항(친생부모의 동의 필요), 입양 배경(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 사유 등), 입양인의 입양 전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⑤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 연도별(’23.~’27.)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초안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과제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 평가

⑥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 설문 항목 내용 재편성
 - 국내 거주 이주민의 변화 및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여 조사대상과 항목 수정
 -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해 관련 항목 재편성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변경
-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업무협의, 검토의견 제시 등을 통해 법무부와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업 지속

⑦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활성화
 - 이민자를 위한 멘토교육, 시민교육 특강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 재정착 난민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제공
 - 지역사회 정착 시 실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금융경제, 생활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재정착난민에 대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소를 치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지원 강화
- 제한 외국인 대상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 20개국 언어로 출입국 업무상담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

터(1345콜센터) 운영

- 질병관리청(1339), 국민권익위원회(110) 등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3자 통·번역 지원

⑧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주간행사 개최(’23.~’27.)
- 국민의 재한외국인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콘텐츠의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 수행(’23.)
-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배포(’23.~’27.)
- 고충상담, 법률상담 및 건강캠프를 내용으로 하는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고충상담’ 개최(’23.~’27.)
- 재한외국인 미담사례집 발간·배포(’23.~’27.)

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지속적 제도 개선 및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 고용허가제 소수업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통역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한 내실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 귀국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미신청 출국자에 대한 찾아주기

사업 운영

⑩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숙식비 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숙식비 공제 개선 관련 실무 T/F 운영(1차 : '21. 9. 7.~'22. 1. 14., 2차 : '22. 9. 30.~)중
 - 실무 T/F를 통해 숙식비 공제기준을 변경(1인당 공제→1실당 공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숙식비징수지침」개선('23.)

⑪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

-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정책 및 생활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
 - 다문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해소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 학령기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정서안정·진로취업지원 및 학습지원 신규사업 추진
-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 개선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하여 주요 결혼 상대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중개문화 유도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한 이주여성 지원 강화

초 안

- 13개국 언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예방접종 등 관련 내용 안내 및 우울감 상담 진행
- 생활정보, 부부갈등 상담 등 통역 지원

⑫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 교육평가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생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전통음식 교육,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화합 유도
- 지역농협 자원을 활용한 농촌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의 화합 및 농촌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교육, 가족 구성원 간 갈등해소·관계향상 교육 실시
 - 농촌 후계세대로서의 비전 제시를 위해 농업분야 진로 탐색 교육

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보호, 통역서비스,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자국 대사관 등 관련 시설 연계, 귀국 지원 등을 통해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을 통해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 상담 실시

⑭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의 모국어 상담, 무료 법률·의료 서비스 제공, 숙식·주거 지원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를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⑮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 국적 및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공교육 진입 지원
 - 법무부 연계 국내학교 입학·편입학 안내(연 2회) 실시
 - 유관기관에 국내학교 입학·편입학 안내자료(15개 언어) 배포
- 입국 초기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 입국 초기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설치 확대

⑯ 외국인 입국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등
 - 강력 범죄자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등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동포의 입국기회 확대

⑰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 인신매매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전국 주요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전국 60개 모든 검찰청에 여성·아동대상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
 - 아울러, 향후 검찰은 성매매 사건 수사 시 인신매매 피해자를 사전식별하기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국가인권위원회)’ 및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국가인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초안

- 사회적 약자인 아동 또는 여성, 지적장애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갈취, 협박 등에 대해서도 엄단기조 유지 예정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검찰은 인신매매 사건을 포함하여 사건 수사 시 피해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소 시 사건처분결과 및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재판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는 등 피해자 참여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법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
 - 향후 검찰은 인신매매 관련 법률 및 지침을 통해 피해자 식별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특별단속)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매년, 연 2회)
 - 특히, 어선 및 양식장 대상 외국인 노동자 강제노동 집중 단속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매년, 연 1회 이상) 및 임시숙소 지원 등 보호·지원체계 강화(수시)
 - *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사단법인),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스마일센터 등
- (교육·홍보) 해양경찰교육원(수사연구소) 전문교육과정 중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교육 확대시행(~'23.)
- 도서 지역의 염전 종사자·선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일제점검을 실시
 -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 강제 근로 등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성매매·성착취 등 다양한 유형의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
- 아동·청소년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체계 구축

초 안

- 관서별 여성청소년수사·생활질서 등 유관 기능 간 협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 추진
- 랜덤채팅 등 SNS상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그루밍’)가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 수사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 수사 제도 보완 추진
 - 피의자가 성인인 대화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간 보완 입법 논의
- 선원근로감독관의 선원 노동현장에서의 인신매매 식별능력 강화와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개정 「선원법」에 따라 선사 및 선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시행
- 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차별 해소('22. 1. 19. 노사합의)
- 지정교육기관, 업·단체 및 선원노련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인권보호실태 모니터링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20. 6.)’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근로실태조사* 지속 추진
 - * 근해 외국인 어선원 대상(연 2회)
- 한국과 인도네시아 MOU의 후속 이행조치를 위해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약정 및 적정 송출비 기준 마련,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과의 협력 확대
- 피해자식별지표(안) 고시 및 관계 부처 사용 권고('23.)
- 인신매매등피해자 통계자료 확보 및 현장을 반영한 지속적인 식별지표 수정 및 개발('24.~'27.)

⑱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안내 문자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
- 시·도 교육청 협의회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교원의 통보의무 면제사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을 학교 및 유관기관에 적극 안내
- 현장 수요에 맞춰 다국어 가정통신문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번역 언어를 단계적으로 추가 보급
 - － 시·도 교육청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통·번역 서비스 지속 제공
-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재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활용한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
 - *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일상생활로서 필요한 한국어
- 시·도 교육청 협의회 등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서 한국어학급 전담교원을 확보하여 필수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지속 강화 추진
 - －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

⑲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통과 노력 지속
 - －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인 경우 상호보증에 상관없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20. 11.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 － 향후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보호·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구조금 지급범위의 확대

초 안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②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 베트남 하이퐁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체류·법률지원 실시

※ 베트남 북부지역 출신 결혼이주여성 및 귀환여성 중에서 하이퐁, 하이즈엉 지역 출신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북부지역 결혼이민자 49%가 하이퐁 출신)

구 분	프로그램 및 사업(안)
사업기반 확립	○ (요구분석) 한·베 귀환 다문화가족 발굴 및 실태 파악 － 일반적 특성, 귀환과정, 경제·사회적 여건 및 욕구 조사 지속 ○ (네트워크 구축) 현지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귀환 결혼이민자 및 아동	○ (학업지원) 공공교육 소외 아동에 대한 기초학습 및 학업지원 ○ (양육지원) 의료지원 연계, 심리상담, 부모상담 등 ○ (자립지원) 귀환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소양 교육 및 취업연계 등 ○ (법률지원) 한·베 가정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지원
한베 귀환가족 포함 공동사업	○ (자조모임) 재정착을 위한 정보(자녀 양육, 취업 등) 공유, 치유프로그램 ○ (언어교육) 귀환 결혼이민자 및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 자존감 향상, 정체성 강화 및 현지 한·베 인재 역량 강화 － 귀환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역량 도모 ○ (다문화도서관) 한·베 귀환 가족과 귀환 결혼이민자 자녀와의 교류·소통 공간 제공

②①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 － 본부의 난민심사 제도 개선 및 정책입안 역량 강화를 위해 난민심사관 등 인력을 증원하고 난민소송 증가에 대응하여 소속기관에 송무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확충
 - － 유엔 난민기구(UNHCR) 등과 연계한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서적 발간 등을 통한 난민심사 역량 강화
 -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및 난민전문 통·번역인 자격제도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난민면접 통역서비스 품질 제고

초 안

- 「난민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난민 제도 개선
 - － 난민인정자의 취업·사회적응에 필요한 상담 제공 등 지원 절차 마련
 - － 난민 신청자를 위한 통·번역 지원의 민간 위탁 관련사항
 - － 난민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제도 운용
 - －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의견진술 청취 시 출석 요구 방법과 서식 등을 법령 및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의견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고 절차적 권리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 난민불인정결정 통지 시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북을 다국어로 제공하는 등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 － 지속적으로 변화·고도화하는 국제 난민 심사 기준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와 간담회를 정례 개최하여 전문성·투명성 제고
 - －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운영
 - － 소송 패소 건 분석, 우수 조사보고서 선정·공유 등 심의품질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
- 국가정황정보 조사·분석·관리 체계 고도화
 - － 난민 신청 다발국에 관한 국가정황정보를 신청 사유별로 통합·정리하여 난민 심사 업무 담당자와 공유
 - － 국가정황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 난민 신청 규모를 고려한 국가정황정보 인프라 확보

②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개선

- 난민 등이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난민 신청자 등의 초기 정착지원
 - －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 후 국내 정착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재정착난민 수용 사업의 방향 재정립
 - －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인정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국내 정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민·관협력을 통한 난민지원 체계 강화
 - － 일반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난민 정책 이해도 제고
 - － 지방자치단체, 유엔 난민기구(UNHCR),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개선방안 마련('23.)

7. 북한이탈주민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개선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 환경의 변화, 북한이탈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정비
-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23.)’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4.~’26.)’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수립·이행

초 안

-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등 정착금 제도 개선

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 직업역량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지속 발굴
 - － 기업 수요, 북한이탈주민의 선호, 취업 유리 업종 등을 고려하여 하나원 직업교육 과정 확대
 -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견기업·강소기업 일자리 적극 발굴, 구인구직 기회 확대, 직업훈련·일자리 연계 확대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창업·영농 정착지원 강화
 - － 청년·여성·전문직 등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지원 확대
 -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체계적·종합적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추진
 - － 귀농귀촌 희망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등 영농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유인 제고 및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행복통장’ 제도 개선 및 사업 운영 안정화

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호 및 지원 강화
 -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위기가구·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발전
 - －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대상 생계 및 생활 안정 지원 확대
 - － 범죄예방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초 안

-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정서·심리 및 건강증진 지원
 - － 하나원, 하나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거점 간 연계 및 통합지원 강화
 - －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및 마음치유를 위한 마음건강센터,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제도,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마음숲’ 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 － 북한이탈주민 대상 긴급의료비 등 의료지원 지속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노력
 - － 자체 특화프로그램 마련, 일반국민 대상 탈북민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 정착 우수사례 콘텐츠 발굴·확산 등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지속
 - － 민간단체, 대학생, 남북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협력 강화

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 신속한 조사, 조사종료 후 하나원으로의 이송 대기기간 단축 등 탈북민 임시 보호기간을 법정시한(90일)보다 단축하도록 실질적 조치 추진
 - ※ '18년 2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을 개정, 탈북민 조사·임시보호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직권 상담, 조사 전후 면담 등을 통해 임시보호 중인 탈북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사·임시보호 절차 개선
 - － 외국제도 연구용역, 인권보호관의 정책·제도 개선 자문, 각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탈북민 조사·임시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 지속 추진

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 학교 적응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지속 실시
 - － 담임·교과교사 등과의 1:1 멘토링, 성장 멘토링, 전문 심리상담 등
-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학부모 교육 내실화
 - －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운영,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 관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교원의 탈북학생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규학교 적응 및 통일미래 양성을 위한 학습 지원
 - － 통일전담교육사, 멘토링·상담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교원·학생·학부모 이해도 제고 연수 등을 통한 북한이탈 학생의 적응 및 성장 지원
 - － 탈북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HOPE) 운영, 탈북대학생 대상 교육지원금, ‘디딤돌 대학’ 사업 등을 통한 적응지원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 －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보호·교육기관 운영 지원
 - － 탈북 무연고 청소년,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대안학교, 보호·교육시설 지원 강화

IV.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은 자유권 및 사회권적 권리의 향유를 증대하고, 사회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술 격차, 사생활권 침해,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등 다양한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함.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 등이 요청됨. 디지털 심화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정책 수립에 있어 인권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IV.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함

1.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① (가칭) 「디지털사회기본법」 제정

-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사회기본법」 제정 추진('23.)
 - －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디지털 질서(정책방향 및 기준) 확립

②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3. 9.)
 - － ①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②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③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별 권리와 책임 ④ 공통기준·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규범체계 마련

-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 정책 방안('21. 3.) 지속 이행
- (가칭)‘디지털 플랫폼 등 신유형 서비스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대응 방안’,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방안’ 등 마련('23.~'24.)

③ 성숙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 연간 35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교육 추진('23.~'27.)
- 디지털 윤리 체험관 운영 및 지역 연계 대국민 행사 개최('23.~'27.)

④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 AI 제품·서비스 기획·운영자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22.)의 분야별 확산('23.~)
-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AI가 기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윤리 영향평가체계 검토('23.~)

※ 유네스코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21. 11.)를 실천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영향평가체계를 마련, 회원국의 참여를 촉구

-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20.) 이행 및 신규과제 발굴('23.~)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인권영향평가 항목 편성 검토('23.~)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22. 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하며, 기술개발·운영 중 지속적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 방지

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 국내 기업들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 지원(’23.~)
- 초·중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교육, 메타버스 아카데미 내 메타버스 창작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23.~)
-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의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을 위한 세부 실천 윤리 개발·보급(’23.~)
- 메타버스 참여 영역별 실천 윤리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활용 지침서 등 개발(’23.~)
- 문화콘텐츠 관련 윤리원칙 이행 및 실천 방안 지원(’23.~)
 - － 각 산업별*·주체별** 윤리원칙 의견수렴
 - * 저작권 산업, 게임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 ** 크리에이터, 콘텐츠 서비스제공자 등
 - － 자율점검표 등 이행방안 마련
 - － 교육·홍보 등 실천 방안 지원 사업 추진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연구 추진(’23.)
 - －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처리유형 및 침해요인 등 분석,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 (가칭)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방안’ 마련(’23.)
 - － 메타버스로 인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메타버스 공동체*가 지켜가야 할 기본원칙 제시
 - *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의 참여로 형성되는 상호연결된 가상현실 공간으로,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공동체로서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협력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

초안

- 메타버스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연 2회)을 통한 자율규제 현황 공유 및 이용자 보호 이슈 논의('23.~)
- 메타버스 이용자 대상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윤리역량 강화 추진('23.~)

⑥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23.)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계속)
-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유도('23.~)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배움터 운영 및 맞춤형·방문교육 실시
 - (지역 특화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디지털배움터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효율성 제고
 - (체험존 조성)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용 키오스크, 태블릿, AI 스피커 등을 배치한 체험존 조성
 - (찾아가는 배움터 버스) 도서산간, 농어촌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키오스크, 태블릿 탑재/서포터즈 파견 등) 운영
 - (이행계획) '23년 배움터 1,000개소('22. 911개소) 운영, 60만 명 이상 교육, 강사·서포터즈 4,000명 채용 예정

초 안

- 시간·지역·공간의 제약 없이 국가 지식정보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 중 국민적 관심도 높은 자료 중심으로 가상 도서관 콘텐츠 제작 및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 운영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계획
’23년	가상 국립도서관 시범 콘텐츠 구축
’24년	데이터 변환, 가상공간 구현, 저작도구 개발(1차)
’25년	데이터 변환, 가상공간 구현, 저작도구 개발(2차)
’26년	데이터 변환, 가상공간 구현, 저작도구 개발(3차) 및 가상 국립도서관 서비스 개시
’27년	신규 콘텐츠 구축 및 고도화

- (해상 원격의료 지원)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바다내비 단말기(영상통화)를 활용하여 관공선·내항선박 대상 원격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 지원
 - 응급상황이 발생한 선박과 의료기관 간의 시스템 연계 및 의료키트 보급 등 시범사업(’23.)을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확대 운영(’24.~)
- (해양 교통정보 음성서비스) 육상에서의 도로 교통정보와 같이 해상에서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해양 교통정보 음성서비스 제공(’24.~)
 - 관계기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바다속보(해양조사원), 어업기상 및 안전 캠페인* 등 정보제공

* 해양사고 속보, 정책브리핑,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등

② 디지털 교육 강화

<국가 디지털 교육체계 전면 개편>

- 정보 과목 필수시수 확대 및 교원확보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학교 정보교과 필수시수를 현행 대비 2배 확대 운영

초안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2. 12.)→학교·학년별 단계적 적용('24.)

- 정보교사 관련 충원계획 및 중기('24.~'27.) 교원수급계획 추진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제공>

- (지역 디지털 교육과정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과정을 지역 수요 기반의 디지털 기술분야로 확대*('23.~)하여 실무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

* AI·블록체인 중심→AI·블록체인+데이터, IoT, 네트워크 등

- 디지털 가상캠퍼스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 이수 지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등을 활용하여 모든 대학생 및 일반 국민까지 교육 확산

③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 접근성 제도 개선 및 표준 확산
 - 국내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웹 접근성 표준 개정('22. 12.)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품질인증 기준(고시) 개정 추진
 -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구매하는 제도 신규 도입('22. 11.~)에 따른 성과 등 모니터링
-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지원·보급 확대
 - 국내 개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개발 지원(연 4건)
 - * 장애인의 의사소통, 학습 등 정보접근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보조하는 기기(점자정보단말기, 입술마우스 등)
 -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속 확대 추진

초 안

※ 보급 확대 계획(안) : ('23.~'24.) 연 5.3천대, ('25.~'26.) 연 6천대, ('27.) 7천대

④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 (스마트 돌봄 지원)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화재 등 응급상황 대응뿐 아니라 정서·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모형을 생성해 대상자 확대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 (현황) 독거노인, 장애인 등 18여만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총 30만 가구에 보급 추진
- (모형 생성) 광주 서구의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에서 웨어러블 장비, AI스피커 등을 도입해 효과적인 돌봄 모형 개발
- (대상자 확대)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24년부터 매년 대상자 발굴해 '27년까지 총 50만 가구 운영 확대
- (스마트 건강관리)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행태 개선 등을 위한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27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 스마트밴드,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 측정기, AI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보건소 전담 인력이 대상자의 건강수치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실천과제를 부여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22.) 86개소→('23.) 139개소→('27.) 258개소

3.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 정보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마이데이터 실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반조성 활동 추진(매년)
- 자기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중심의

초 안

새로운 실증서비스 발굴

- 매년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교육,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대국민 마이데이터 인식 제고 활동 추진
- 정보주체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23.~)
-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 시스템 본격 적용('25.)

② 보안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보안제품 도입 지원(1400개社)('23.)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 지속 추진('24.~'27.)
 - 보안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웹 방화벽, 이메일 보안 솔루션 등 보안제품 도입 지원

③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 추진
 -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계정보 일괄변환 제도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개정 추진 및 지원

※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3. 1. 3.)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할 경우 본인확인 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필요. CI(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부과 위반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④ 데이터 보호 및 관리 강화

- 검색·SNS·OTT·앱마켓·쇼핑·모빌리티 등 부가통신 서비스별로 세분화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별로 통합 평가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종합평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 제2항)

-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다수 연계 플랫폼을 양산하므로 기존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선제적 이용자 보호 유도
- 추진계획
 -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통합 시범 평가 도입('23.)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통신 장애 등 사회적 책무 제고 관련 배점 상향 및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항목 도입
 -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통합 본 평가 실시('24.) : 데이터 이중화 등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을 사업자가 자체 진단하여 자율적으로 미비사항 등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데이터 보호 자가진단제도 활성화
 -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통합 평가 안정화('24.~'27.) : 평가자료 작성 단계부터 자료 제출 실시, 평가위원의 심사 및 평가결과 대국민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 적발시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조치 의무 규정 신설 관련 국회 입법 논의 지원('23.)

※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홍정민 의원, 13820, 13823, 13825호)국회 계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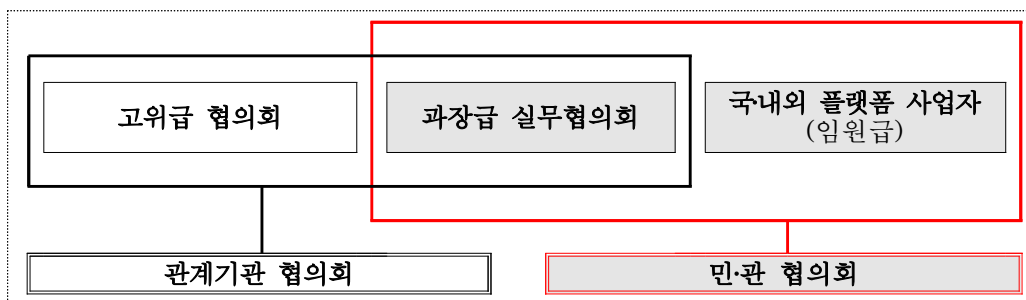
초 안

-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 확대 추진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자치단체의 피해지원시스템과도 연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 국내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해외 법 집행기관·글로벌 IT기업들과의 공조 확대
-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학교전담경찰관 및 교육사이트·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범죄예방교육·홍보 실시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목적) 정부·민간 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
- (구성)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 담당과장 5명,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 임원 5명, 학계·법조계 전문가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됨

* 관계 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 참여 플랫폼 사업자 :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 (운영)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 법안이 발의되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논의를 요하는 안건이 선정될 경우 수시 개최
-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전담대응체

초 안

계' 구축 및 강화

- 개정 법률 반영 등으로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및 범죄 대응 정책 고도화 추진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하여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통한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을 통하여 맞춤형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先삭제 지원 지속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접근성 제고
 - * ('21.) 7개소→('22.) 10개소→('23.) 14개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연구용역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실시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지원하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
 - ※ 신고삭제 요청기관 지정 범위 확대, 신고삭제 요청기관 지정 확대
-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시스템 구축
 - 동남아시아 신생 사법협력 네트워크인 「SEAJust*」가입을 통해 주요 인접국들과 형사사법공조 강화('23.)
 - * SEA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는 '20년 UNODC의 지원 하에 만들어진, 동남아 형사사법공조 중앙당국 간 직접 소통 창구
 -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가입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내 비준 준비('24.) 및 「유엔 사이버범죄협약」성안 논의 적극 참여('24.)를 통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추적 및 환수 강화

초 안

* 서방국가 중심의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등이 주도하여 현재 유엔에서 성안 논의가 진행 중인 사이버범죄 관련 협약

②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 (엄중 처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기존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

－ 심한 욕설 댓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 표현, 가족 구성원 비하 등 악성 영상 및 댓글 게시행위는 엄중 처벌

- (삭제·차단) 수사 중 발견된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요청 등을 통해 삭제·차단 요청 지원

※ 다만, 명예훼손·모욕죄는 개인적 법익으로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피해글이 게시된 업체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예방 활동)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누리캅스**의 ‘사이버 공간 불법 유해정보 클리닝 활동’ 전개 등을 통한 예방 활동 적극 추진

* '12년 시작되어 현재 현직 사이버수사관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년 12월 기준 총 2,289회에 걸쳐 351,136명에 대해 교육 실시

** 누리꾼의 ‘누리’+‘cops’(경찰)의 합성어로 ‘사이버 명예경찰’을 뜻하는 민·경 협업 파트너로, '07년부터 운영되어 '22년 현재 833명이 활동 중

- (관계기관 협업)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신종 매체·기술 대응) 딥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 및 도구를 이용한 신종 범죄 대응

*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 이미지와 음성·영상을 합성해 허위 콘텐츠를 만들거나 변형하는 기술

초 안

- ‘딥페이크 앱’ 등을 이용한 가짜 영상 여부를 신속히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축 검토

-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 관련 입법 지원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온라인 범죄 대응 강화
-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온라인에서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정부안 제출 검토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이버범죄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23.)

③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 대상별, 지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자유학기(년)제 등 확대를 통한 공교육 기반의 유아·어린이·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23.~’25.)
- 평생교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거점을 활용한 사회 미디어교육 활성화로 보편적 미디어 리터러시 기반 구축(’23.~’25.)
- 전국 10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및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계속)
- 유아 대상 놀이형 교육 및 청소년 교육과정·진로탐색 과정 연계 교육, 청·장년층 및 노인·장애인·다문화 가족 대상 격차없는 평생교육 제공
- 미디어교육원* 중심의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강화로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인프라 마련(’26.~’27.)

* ’21년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미디어교육 종합연수원으로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연구모임 지원 등을 사업으로 하여 미디어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초 안

- 지역민의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로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허브 육성(계속)

* ('23.) 대구·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24. 이후) 전남·경북·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 도서·산간 등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디어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으로 분산된 학습자료·강좌 등을 종합 제공

- 온라인 혐오 표현 해소를 위한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고도화('25.~'27.)

* 생애주기별로 콘텐츠 생산·이용·활용 등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민간자격시험* 실시 및 국가공인자격증 추진('26.~'27.), 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갖춘 강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 및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규 미디어교육 강사를 양성(연 2회)하고 미디어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기존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연 18회) 운영

* 민간자격시험 : 미디어교육지도사('16.~), 미디어교육사('22.~)

- 온라인 혐오 표현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26.~'27.)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시정 요구(계속)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 국내 및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 의원 발의 8개 법안에 대한 병합안의 입법 지원 추진('23.~)
- 이용자 피해구제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국제 콘퍼런스 운영('23.~)

초 안

- 학계·전문가·시민단체·공공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 협의회」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이용자 권익 침해 위험을 검토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포함한 이용자 정책 발전방안 논의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각국 전문가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공조

※ '19년부터 매년 12월 개최 중

- 이용자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연구 추진('23.~)
-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의 합리적 적용 기준 및 기술적·관리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반 운영 등

⑤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특정 학령기(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중독 전수진단
- 인터넷중독 위험단계에 따른 수준별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공존질환*을 보유한 인터넷중독 고위험 청소년에게 병원 치료비 지원
-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이외 기타 우울증, ADHD(주의력 결핍장애)등의 질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를 지속 확대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및 병원 치료 연계 등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

V.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한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다루고,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확보·지원하며, 구제책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인권경영 제도화 및 고충처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존중을 위한 과제는 노동권·적절한 생활에 관한 권리 등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기업 활동에 대한 인권 정책의 특수성과 최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8. 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당시 '기업과 인권' 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여 도입하였고,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도 하나의 장으로 다루고 있음.

1. 기업과 인권

<인권경영의 제도화>

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개발협력사업 참여기관의 인권존중 책임 강화>

-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외사업장 인권 책무성 제도 강화
 - － 파트너 인권영향평가 실시 확대 및 사업장 인권영향평가 실사제도 운용 강화를 통해 사업수행 파트너·현지 사업파트너·현지 주민 등 공급망 내 인권위험 사전 예방
 - － 현지사업장 인권침해 신고창구 구축을 통한 구제절차 제도 개선

초 안

- 파트너 인권경영 확산 지원 및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 개발협력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실시 및 컨설팅 지원 확대를 통한 인권경영체계 확산
 - － 인권 현안·실무 중심 맞춤형 인권교육 제공을 통한 개발협력 참여 기업의 전문성 강화
 - － 인권경영 및 인권기반 개발협력 정책 실행 과정에서 기업·NGO 등 이해관계자와 정례적으로 소통하여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 국제인권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권고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 － 법무부 발간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활용 방안 연구 및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 연구 실시
 - － 기업과 인권 관련 학술대회·포럼 주최를 통해 국내 정책추진 토대 마련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및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내용의 법제화 추진
 - － 국회 제출된 「인권정책 기본법안」(’21. 12. 정부안 제출) 논의 지원 지속

<공정임금 체계 확립>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여성고용률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 AA 대상 사업체에서 제출하는 임금현황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의 자율개선 적극 유도
- AA 사업장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초 안

-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23.~)
 - 「산업발전법」과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따른 K-ESG 가이드라인 개정 시, 정부의 인권정책,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정책 동향을 반영
- ※ '21년 12월에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은 1~2년 주기로 개정될 예정

- 「산업발전법」
 -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인권·환경 등에 관한 공급망 실사 컨설팅 지원('23.~)
- 「제2차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수립('25.)

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 조달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약자 지원, 고용 창출, 고용환경 등의 분야에서 해당 기업에 가점 지속 부여
- 공공조달 부문의 인권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준 개정 지속 확대

④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 「제3차('22.~'2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과제 추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 기업·소비자 지원 강화 등

-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
 -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홍보활동 강화
 -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시험장비 구축 및 개정안 마련 등
-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 － 신제품 출시 및 제품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 아동 근로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홍보 등 추진
 - －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예방 및 시정 조치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등을 통해 자율개선 추진
 - * 근로조건 자율개선 : 민간노동전문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자율개선 유도
 -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및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를 통해 적극적인 아동 근로 권익 보호 추진
 -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아동 상담, 교육, 홍보 및 무료권리구제 지원 등
 -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 ‘알리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과 관련한 기초노동질서 안내 및 준수 계도
 - － TV, 라디오 등 각종 생활접점 매체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에 대해 집중 홍보
 - － 아동 고용 사업장 조사, 근로권익 사업 평가 등 각종 연구*를 통한 아동노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 청소년 근로권익 사업 평가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19.),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20.), 연소근로자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 청소년 고용

초 안

사업장 실태조사('21.) 등

- 지속적인 실태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하여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 － 사업장에 대한 법 위반 예방 지도·감독, 아동 노동에 대한 상담·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
- 기업의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영향평가 방향 검토
 - － 국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 방향 검토

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 유엔, WTO(세계무역기구),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기업 관련 인권문제 고려
 - － 기업 관련 인권 향상에 필요한 논의 및 결의(안) 채택 시 적극 참여
 - － 우리 정부 발언 시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 － 기업과 인권 이슈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대한 답변 및 정보제공 등 유엔기구 질의에 적극 대응
- 다자무대에서 우리 정부가 신기술과 인권 결의 관련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대응 지원

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 (진출국가별 노무관리·인권경영 정보 제공) 주요 진출국 노동시장 현황, 노동법·제도 등에 대한 노무관리 종합안내서 뉴스레터 발간 및 세미나·포럼 개최 등
- (진출기업 현지 대응 지원) 주요 진출국 진출기업 대상 노무관리 현지 세미나, 컨설팅, 간담회 등 개최
- (유관기관 협력 공고화) 동남아 등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실적 및 계획 공유를

위한 아세안 노무담당관 회의 연례 개최

<고충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20. 9.)에 따라 적극적인 구제 추진
 - － 건강피해 조사기관 확대, 위원회 운영 효율화,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속도 제고
 - －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1:1 대면상담, 생애주기별 건강모니터링, 콜센터 운영 등 피해자와의 소통 및 지원 서비스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1. 12. 시행)에 따른 이행 기반 구축
 -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연착륙을 위한 피해구제 모의운영, 조사지침 마련

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자동차 리콜>

-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유도
 - － 리콜 사례 분석을 통해 제작사용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유도('23.~)
- 제작사의 시정률 제고
 - － 제작사의 리콜 시정률 제고를 위해 시정률 보고기간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3.~)
 - － 반기별 시정률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동차 리콜 재통보 조치 등 리콜 시정률 제고

초 안

-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 리콜 알람서비스 지속 확대

<위해제품 리콜>

- 리콜 이행점검 강화

- 사업자별 점검 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리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리콜 이행 HelpDesk 운영을 통해 사업자를 적극 지원
- 리콜 미이행 사업자는 형사고발하고, 리콜 불성실이행 사업자는 보완명령 및 재점검 실시

- 리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방안 >

구분	내용	협력기관
유통 시장 감시	소비자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유통 중인 리콜의심제품의 적발 온라인몰로 재유통되는 리콜제품 전담 감시요원 운영	6개 소비자단체
리콜제품 구매 차단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위해제품으로 확인되는 즉시 전국 유통매장 바코드 결제 시스템 및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위해제품 정보가 전달되어 소비자 구매를 차단	대한상공회의소
리콜제품 판매 중지	리콜제품 등록판매 중지 협력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쿠팡 등 온라인유통업체

- 리콜제품 소비자 인식 제고

- 리콜제품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SNS 등을 통해 배포
- 대학생 등 안전지킴이를 통해 리콜제품 정보를 확산

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소통 강화

초 안

- 사건당사자와 NCP 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소통기회 확대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소통채널 운영
- 가이드라인, NCP 기능 등에 대해 인터넷, 영상, SNS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확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인식 강화
- 법무부 등 유관부처 및 경제단체, 해외 NCP와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확보

④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정부 개정안을 '21. 10. 제출하고 통과를 위한 노력 지속
 - 실태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소비자권익제도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권익 보호 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추가
 -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되어 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절차의 중복과 지연 방지

VI.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과 인권문화는 인권 보호·증진 정책의 공고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고,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에서도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함.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국제인권조약 비준·이행>

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에 대한 가입·비준 가능성 연구 및 검토
-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가입 가능성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 검토

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호 (사)목 유보 철회 검토
-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유보 철회 검토

초안

③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이행보고서 작성·제출·심의를 통해 해당 조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활동과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강화 지속

(국가보고서 작성)

- '23년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 '24년 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

(심의 준비)

- '23년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 '23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 '24년(예상)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 '25년(예상) 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 (미정)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 (미정)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1·22차 국가보고서 심의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방문 조사 시 협의 및 관계 부처 면담 실시 등
-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마련
 -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심의와 심의 결과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지속

④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한 이해력과 책임감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지원
 - (초·중·고) 선도교사 선발, 체험활동 기회 제공, 수업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초·중·

초 안

고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기반 확대 지원

* 오픈소스 기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초·중등 자율편성시간 등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독려

- (대학) 대학(대학원 포함) 내 커리큘럼 개발 및 학생활동·특강 지원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학술 기반 강화 지원
- (국외) 세계시민교육 의제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고 개도국 교육자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 지원

⑤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 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소통·협의 절차를 정례화하여 국가보고서 내용과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점검 강화
 -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심의 후 심의 결과 보고
 -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 정리와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 점검 후 결과 보고 및 공개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및 관보,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일반 대중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 제고
- 개인진정 권고의 국내 이행방안 검토
 - 개인진정 권고의 국내 이행방안을 위해 법원, 행정부, 전문가 간 협의 지속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입에 따른 후속조치(개인진정 등 추계 및 지원 필요성 검토 등)
- 국제인권협약기구 등의 권고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지속
-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관련 학술회의·포럼 개최 및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제도화

초 안

추진을 위한 도서 발간·배포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① 국제사회 인권협력 및 역할 강화

-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상정되는 주제별·국별 결의 참여를 통해 전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통해 타 회원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권고 제시
-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인권’, ‘신기술과 인권’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슈 적극 추진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의 지속 추진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건설적 역할 수행

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 인권, 민주주의 관련 협의회,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협력 기반 강화
- 국제 인권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인권 증진에 기여
-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국제 인권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인권 증진에 기여

③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 인권기반 사업성과 관리체계 확립
 - 사업기획 시 인권분야 기술자문 활동, 인권지표 개발, OECD 정책마커 고도화를 하는 등 인권기반 개발협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실행
 - 개발협력사업 평가 시 인권전문가 참여, 인권평가 매트릭스 및 평가를 통해 인권 주류화 평가체계 강화

초 안

- 인권기반 개발협력사업 발굴 다각화 노력
 - － 「인권분야 중기전략(2021-2025)」상 ‘인권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 ‘인권 보호 프로그램’, ‘취약계층 권리증진 프로그램’ 발굴 강화
 - ※ 평화·젠더·장애 분야 등 이슈별 통합적 권리증진 사업 발굴 확대, 시민사회·혁신 기업 참여 강화를 통한 사업유형 다각화
 - － 현지 시민사회·장애인단체 파트너십 강화 통한 글로벌 인권 증진 기여
- 개발협력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고도화함으로써 인권위험 관리체계 확립
 - － 사업기획 시, 인권위험 요소 스크리닝 및 인권위험 관리체계 확립하는 등 신규사업 대상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이행
 - － 고충 처리 메커니즘 구축, 사업수행 민간부문 인권 인식 제고 확대 등을 통해 해외 현지 사업장 인권위험관리 책무성 시스템 강화

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민간 중심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지속 추진
 - －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공유재산 지원 확대 등의 인프라 개선, 자원봉사관리시스템(1365 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 등 근거 마련
- 시민사회·모금단체 의견수렴 등 민간영역 협력 강화
 - － 국가 책무, 기부문화의 날 등 기부문화 활성화
 - － 전용계좌 제출 및 현장·현금 모금 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근거 등 투명성 강화

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초 안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추진
 - ('23.) 공모 진행 중, 65억 원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교육 및 평가
 - 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 이행사항 확인을 위한 사업·회계분야 평가 실시
 -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회계검증 추진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
 -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인권 논의에 지속 참여
 -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 등 참여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정책에 참고하고, 국제 사회와 지속 소통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등 활동 적극 지원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기록·보존·관리
 - 북한인권 기록의 체계적 분석, 보존·관리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록검증과 책임규명 준비 등에 필요한 국내외 북한인권 연구·분석자료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축적
-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3.~'25.)' 및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 추진방안 마련·시행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협력 추진

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 지속
- 남북 간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은 향후 남북 간 협력 여건 조성 및 정부 정책방향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남북 간 보건 의료 분과회담 및 실무회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 이행 및 발전
 -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방역, 말라리아 및 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남북 간 협력 추진
 - －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 및 기술협력 등 북한의 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 추진
-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여 식량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협력 등 추진
 - － 북한 유사 기후대 식량·채소 연계 작부체계* 개발,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농업 환경정보 분석, 토양 비옥도 증진을 통한 생산성 증대 기술개발 등
 - * 일정한 경작지에서 몇 종류의 작물을 해마다 바꾸어 재배(윤작, 대모작 등)하거나 같은 해에 여러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방식
- 종자, 묘목 등 자원 비축,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북한 산림복구,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병해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산림과학기술 및 정보교류 추진
-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
 - －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과 보건 의료 분야 협력, 산림 병충해 등 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 적극 추진
 - －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여 식량난을 완화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협력 추진

초 안

-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등 민간단체의 대북 활동 지원 활성화
- 영유아 영양지원, 보건 의료 개선사업 등에 기금지원 검토 등 국제기구 북한지원 사업 공여 및 국제협력 추진
- 전원 상봉 목표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우선 추진하고, 이산가족 화상·대면 상봉 재개 및 정례화 추진
-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사업 확대
 -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23.~)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23.~)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지속 추진
 - 지역별 초청행사, 위로방문, 물품 지원 등 이산가족 소통·위로 추진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및 억류자 송환 추진
 - 남북회담 및 국제협력을 통해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송환 추진
 -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유물 수집, 전시 개편 등
 - 전시·전후 납북자단체 활동 지원, 피해자가족 위로·지원 등 추진

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 통일 이후 인권정책을 고려한 연구 추진
 - 통일 이후 인권정책 관련 동·서독 기타 체제전환국 등 국내외 사례 조사연구

④ 북한인권 관련 법·제도 정비

-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 － 국회에 필요성 설명 및 재단이사·자문위원 추천 협조 요청
 - － 국회의 재단이사·자문위원 추천 시,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국민 일반 대상 교육>

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 학생·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지속

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와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증진
- 국제인권 뉴스레터 및 카드뉴스 발간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성 증진
- 성별, 국적, 인종, 장애, 병력 등 다양한 사유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지속
-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 － 공공·교원·2030·시민과정 등 각계각층 대상의 사이버 강좌를 통한 교육 실시

초 안

- 단기과정(5일 미만) 운영 시 ‘북한사회의 이해’ 과목에 인권 관련 내용을 구성하고 통일교육전문강사 활용
- 장기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시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한 북한인권교육

<학교 교육>

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 교과용 도서 상시 수정·보완 체제 운영 시, 인권 요소 관련 내용 검토 반영
 -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체제를 구축하여 수정·보완 승인 사항을 상시 점검
 - 국·검정도서는 상시 수정·보완 체제를 상시 활용하여 수정 및 보완 실시

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교원 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지속 안내하고 예비교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지원 지속

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일반학교 장애이해(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 감수성 향상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인권)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디지털 기반의 ‘장애이해체험존’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애이해체험관’ 설치 확대
 -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대상 확대

초 안

- 학교 과정 및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자료 개발·보급
-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 학교별 장애인식 수준 진단을 위한 지수 개발 및 활용
-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④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

-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학내 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 인권 토론회, 영화제,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방식 다각화
 - 가해자 대상 인권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학내 구성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인권 홍보 관련 다양한 활동(공모전, 포스터·리플릿·영상물 제작 등)
 -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개발 시범사업’(7개교, 5억 원)을 통해 인권센터 안착 지원
-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수업모델, 프로그램 지속 개발·보급
-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시·도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합동으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개정·보급 추진
- 매년 학교인권교육협의회(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도 교육청)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학교 규칙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 실시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 매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작성·통보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매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 평가

-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에서 인권 관련 교육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법정언행 및 법정운영기술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등의 연수과정도 지속적으로 실시
 - － 법관에 대한 교육·연수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보완

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 － 법 집행 전반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직렬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내실화
 - － 사례·실무수습 중심 토론식 교육을 확대 편성하고 교육생의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여 교육만족도 제고 및 현장 대응 역량 향상
 - － 내부 교수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직렬별 맞춤형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권교육의 직무 적합성·전문성 제고
- 법무·행정 직렬별 인권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체계 개선
 - － 검찰직 : 피의자·참고인 조사 상황 외 압수·수색, 호송·인치 등 강제수사 및 강제처분에 대한 모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맞춤형 교육 실시
 - － 교정직 : 법무연수원·지방교정청 단위 교육 강화, 인권침해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 행정에 적합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교정 행정에 특화된 인권교육 실시
 - － 보호직 : 보호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개선 교육, 소년보호기관 관련 인권침해사례 교육 실시
 - － 출입국관리직 : 출입국 심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 시 적법절차 준수 요령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긴급보호·단속 장비와 계구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초 안

- 경찰 인권교육 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 － 경찰 인권교육 실태를 진단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
 - － 핵심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찰 인권교육의 비전 제시
-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 도입·시행
 -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 확대 및 전면시행 예정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활성화
 -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이를 활용한 인권교육
 - －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교육 강좌 마련
 - － 각종 직무 매뉴얼과 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주기적 교육 실시 및 관계기관 교육 지원

③ 군 장병 인권교육

- 전 장병 대상 계급별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 － 소속 부대에서 지휘관, 인권교관, 법무관, 민간 전문가 등이 전 장병을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인권교육
 - － 훈련병, 병 분대장, 사관생도, 부사관 후보생, 보수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대에서 인권교육
 - －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각 군 인권교관 교수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국방대학교 연 7회, 국방

초 안

부 연 8회의 인권교관 교육 실시

- 직무맞춤형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군 인권업무종사자(수사, 의료, 상담, 모니터단, 교정, 법무, 훈육)를 대상으로 7개 과정을 운영
- 부대 지휘관의 인권친화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과정으로 부대 지휘관 교육 연 4회 운영
- 온라인 영상콘텐츠 등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 인권교육 개설 확대
- 장병 인권교육 프로그램 ‘리얼 병영톡! 행복한 군대이야기’를 통해, 장병들에게 재미 있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병 인권교육의 실현을 위해 개편한 ‘국군 인권교육교재’를 각 군부대에 배부하여 장병 인권교육에 활용(∼’23.)
- 인권 관련 업무종사자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담업무종사자 인권교육 교안 등 사례기반 ‘맞춤형 교안’ 개발

④ 변호사 인권교육

- 변호사의 인권침해행위 등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징계 강화 및 징계사례 전파
-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칙 인가 및 관련 규정 관리·감독 시 변호사 윤리의식 제고에 저해되는 규정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변호사 연수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 법률사무종사제도 관련, 여성·청년 변호사에 대한 폭언, 성추행,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 여성·청년 변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주의사항, 신고 및 구제방안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속 실시

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및 학대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강화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권리 및 인권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실시
- 다누리콜센터 상담사의 지속적 인권교육을 통한 종사자 인식개선 추진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상 교육>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소규모 실습형·참여형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을 수행하고 홍보 지속 추진
-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운영*을 통해 노동인권 의식제고, 근로 상담 및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등 안내

* 중앙지원단(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개소와 전국 17개 시·도별 사업 운영

- 학교, 학교밖지원센터, 쉼터, 근로사업장 등 청소년의 근로요구가 높은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노동 인권교육” 실시
-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장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및 홍보물 배포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생활법률, 산업안전 등 기본적 근로조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향상에 대한 포럼 개최

초 안

- ‘아동권리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아동권리인식 및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체감 정도 등을 조사
- ※ 아동인권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항목포함
- 하나원, 하나센터 등을 중심으로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함양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권 감수성 향상과 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의 대상별·내용별 콘텐츠 개발, 확대 및 보급

<인식개선>

① 성평등 문화콘텐츠 및 실천문화 확산

- 교육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에 맞춘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 아동·청소년, 교사 및 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생애주기별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등 맞춤형 콘텐츠 지속 보급
-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양성평등 관련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지역단위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원
 - － 청년, 학부모 등의 주민참여형 정책모니터링 실시
 - － 취업·주거·안전·맞돌봄(부모가 함께 아이돌봄) 문화 확산 등의 소통 프로그램 추진

②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초 안

- 보도자료 평가 시, 성차별적 언어 표현 기준 적용
-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감수 시 성평등한 언어 표현 사용 권장

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 가족 구성원 간 평등한 가사·돌봄 분담 등 상호 존중하는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맞벌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

④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평가 절차 및 지역인권행정 체계 마련, 인권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지속